

RR 2012-09

#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 개정협약 채택의 후속조치와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책임자: 박인우(고려대)

RR 2012-09

#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 개정협약 채택의 후속조치와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책임자: 박인우(고려대)

공동연구원: 정종원(울산대)

연구보조원: 유정의(고려대)

연구협력관: 김혜림(교과부)

이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점연구소지원사업비에 의해 수행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소의 견해를 밝혀둡니다.

## 머 리 말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중요시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시되면서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는 주요 국가들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대학생이 해외 고등교육기관에 유학 가던 것처럼 해외의 대학생들이 우리나라로 유학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등교육 국제화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2012년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 명의 유학생을 국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과제를 발표하였다.

학위인증은 해외 고등교육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고등교육 학위는 국가나 기관에 따라 매우 다양한 기준에 의해 수여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미 지역 국가 간의 학위 인증과 관련하여 1960년대부터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아태지역에서도 1983년도에 1차로 지역 국가 간의 학위 인증과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지만, 사실 상 이 협약은 유명무실하였다.

최근 고등교육 국제화의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아태지역의 국가는 실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협약 체결을 위해 2011년 회의를 가졌으며, 우리나라도 이 협약안에 서명하였다. 이 연구는 기 서명된 협약안이 실제 고등교육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과제를 도출하고, 이 과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대학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해 준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12년 10월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소장 신 현 석



## 연구 요약

1983년 12월 방콕에서 채택된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습결과 및 학위 인정에 관한 지역협약(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은 아태지역 내 교육제도의 광범위한 다양성과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경제적 배경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학습결과 및 학위를 가능한 폭넓게 상호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21개국이 비준하였다. 그런데, 1983년 이후 고등교육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상기 협약에 주요한 변화상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1년 11월 동경에서 아태지역 26개국 장관급 각료들이 참석한 UNESCO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학위인정 지역협약개정안”이 채택되었다.

이 연구는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 개정협약 체결의 후속조치와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 인정 협약 체결의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화, 세계화, 국가 간(cross-border) 고등교육 교류, WTO/GATS 등이 제시되었고, 더불어 아·태 외 지역에서의 고등교육 학위 인정 협약 및 개정 현황(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지중해 협약, 아랍국가,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을 분석하였다.

둘째, 아·태 지역 고등교육 학위 인정 관련 국내 고등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화 및 개방화 현황과 현행 외국학위 인정업무의 현황 및 문제점이 분석되었고, 마지막으로 현행 고등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의 질 관리 체계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었다. 국내의 고등교육 질 관리 체계로 대학 기관평가와 대학정보공시제가 제시되었다.

셋째, 고등교육 학위 인정에 대한 유럽 지역 선행 사례가 분석되었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학위 인정의 표준이 되고 있는 리스본 협약(Lisbon Convention) 및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를 통한 유럽지역 내 고등교육 학위 인정에 대하여 분석하고, 유럽 지역 국가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on Center) 구축 및 네트워킹 전략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럽지역

및 국가단위 고등교육 질 관리 및 평가체계의 개발 및 연계 현황을 살펴보았다.

넷째,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 인증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분석하였다. 1983년 방콕에서 최초로 비준된 협약과 이후에 이를 개정하기 위한 활동이 제시되었다. 개정 협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2011년 동경 회의, 2012년 서울과 난징 회의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아·태 지역 고등교육 학위 인정 협약 비준에 따른 후속과제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국내의 고등교육 학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정보 센터의 구축이 필요하며, 외국 학위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고등교육 평가 인증 체제 구축,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이외 분야와의 연계 방안 탐색(국가 자격 체계, 평생 교육 분야 등)을 제시하였다.

# 차 례

<b>I. 서론</b> .....	<b>1</b>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및 범위 .....	2
3. 연구방법 .....	4
<b>II.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 협약 체결 배경</b> .....	<b>5</b>
1. 고등교육 분야의 주요 동향 .....	5
2. 아태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고등교육 학위인정 협약 및 개정 현황 .....	10
<b>III. 국내 고등교육의 학위인정 현황</b> .....	<b>16</b>
1.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화 및 개방화 현황 .....	16
2. 현행 외국학위 인정업무의 현황 .....	27
3. 현행 고등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의 질 관리 체계 .....	35
<b>IV. 고등교육 학위인정 유럽 사례</b> .....	<b>52</b>
1. 유럽지역의 리스본 협약 및 볼로냐 프로세스 .....	52
2. 유럽지역 국가정보센터(NIC) 구축 및 네트워킹 .....	57
3. 유럽지역 및 국가단위 고등교육 질 관리 및 평가체계 .....	60
<b>V.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 협약 현황</b> .....	<b>65</b>
1.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습결과 및 학위 인정에 관한 지역협약(1983, 방콕) ..	65
2. 아태지역 협약 개정을 위한 활동 .....	67
3. 협약 채택을 위한 동경회의(2011) .....	69
4. 2012년 5월 서울 회의 .....	71
5. 난징 회의(2012년 10월) .....	76

VI.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 협약 개정안 비준에 따른 후속과제 .....	85
1. 국가정보센터의 구축 .....	85
2.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고등교육 평가인증체제 구축방안 탐색 .....	87
3. 외국 학위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탐색 .....	88
4. 고등교육 이외 분야와의 연계방안 탐색 .....	88

참고문헌 .....	90
------------	----

## 부 록

<부록 1> 아태지역 협약 수정본 .....	95
<부록 2> Toolkit for the Recognition of Foreign Qualifications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학위 인정 지역협약에 관한 툴킷) .....	148
<부록 3> 2012년 5월 서울 회의 한국 보고서 .....	163

## <표 차례>

<표 1> 국제회의 개념과 의미 요소 .....	7
<표 2> UNESCO Higher Education Portal 참여 지역별 국가 .....	13
<표 3> 고등교육 국제화 모형 및 지표 사례 영역 비교 .....	18
<표 4> 고등교육 프로그램/기관 국제화 유형 .....	20
<표 5> 해외 대학의 분교 설립 계획 .....	23
<표 6>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 국제화 10대 주요 정책(2012) .....	24
<표 7> 유학생(Inbound) 및 국내 학생의 해외 유학생 수 .....	25
<표 8> 출신 국가별 국내 유학생 수 .....	25
<표 9> 2011년도 국내 학생의 유학 국가 .....	26
<표 10> 국내외 대학 간의 학생 교류 현황 .....	26
<표 11> 최근 3년간 일반대학의 외국인 교원 현황과 증가율 .....	26
<표 12> 고려대학교 연도별 영어 강의 강좌 비율과 외국인 학생 수 .....	27
<표 13> 해외학위 검증 요구 연혁 .....	28
<표 14> 대학교의 대학원 입학자 학력조회 절차 사례 .....	30
<표 15> 외국 박사학위 신고 관련 법령과 규칙 .....	32
<표 16> 최근 10년간 해외박사 취득(신고자) 현황 .....	33
<표 17> 우리나라 고등교육 질 관리 관련 제도 .....	36
<표 18> 대학 자체평가 평가항목 .....	41
<표 19> 2012년도 대학정보공시항목 .....	45
<표 20> 기관평가인증 기관 현황 .....	48
<표 21> 대학기관평가 인증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준거 .....	50
<표 22> 유럽 지역 학위 인증 관련 주요 협약 .....	52
<표 23> 볼로냐 프로세스 주요 회의와 내용 .....	56
<표 24> 아태지역 협약 개정안 주요 내용 .....	70
<표 25> 국가별 발표 내용 요약 .....	72
<표 26> 톨킷 초안에 대한 토의 주제와 논의내용 .....	78
<표 27> 지역별 글로벌 협약의 실행가능성 연구 내용과 결과 .....	82

## (그림 차례)

(그림 1) 주요 국가의 고등교육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율 .....	8
(그림 2) UNESCO Higher Education Portal .....	11
(그림 3) 외국인 유학생 관리, 평가 인증제 개요 .....	21
(그림 4) CAMPUS Asia 추진체계 .....	22
(그림 5) 1차 조사 주요 절차 .....	34
(그림 6) 2차 조사 주요 절차 .....	35
(그림 7) 대학 자체평가 절차 .....	40
(그림 8) 대학정보공시제의 수요자별 목적 .....	42
(그림 9) 대학정보공시제 추진체계 .....	43
(그림 10) 대학정보공시제 추진과정 .....	44
(그림 11) 대학기관평가인증제 개요 .....	47
(그림 12) APARNET 홈 페이지 .....	67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83년 12월 방콕에서 채택된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습결과 및 학위 인정에 관한 지역협약(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은 아태 지역 내 교육제도의 광범위한 다양성과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경제적 배경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학습결과 및 학위를 가능한 폭넓게 상호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21개국이 비준하였음.
- 1983년 이후 국가 간 고등교육 공급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국경 간의 교육과 더불어 원격교육이 확대되었으며, 고등교육이 대중화되고, 국가 자격 체계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질 보증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등과 같이 고등교육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
- 이에 따라, 상기 협약에 위와 같은 주요한 변화상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1년 11월 동경에서 아태지역 26개국 장관급 각료들이 참석한 UNESCO회의를 통해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학위인정 지역협약개정안”이 채택되었음(개정된 협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 국가가 서명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비준국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된 협약은 아태지역 국가 간 학문적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국가별 교육 제도 및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고려한 학위 인정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고등 교육 분야 협력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며, 지역 내 국가 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기존 협약의 서명국이자 아·태 지역 내 주요 선진국으로서 향후 아태지역의 고등교육 교류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적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한 상황이, 해외 유학생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교육 선진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학령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고등교육 입학자원의 감소, 고등교육 시장의 개방, 해외 유학생 증가 및 국내 고등 교육 기관의 지속적인 유학생 유치 등 고등 교육 체제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국제간 교류가 증가하는 현실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협약의 개정에 따라 국내·외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외국 학위에 대한 인정 심사 및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고등교육 국가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on Center)의 구축, 외국 학위 인정에 대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 외국학위 인정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통한 외국 학위에 대한 질 관리 체제 구축, 국내 고등 교육 기관이 수여하는 학위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인증제의 확산 및 평가 인증의 신뢰성 확보와 같은 후속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상기 후속대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1)아·태 지역 고등교육 학위 인정 협약의 배경과 추진전망에 대한 분석, 2)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의 개방화, 국제화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 3)지역 내 국가 간 학위 인정과 관련된 여타 지역의 추진 현황에 대한 분석, 4)협약의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과제의 규명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설정이 필요함.

## 2. 연구내용 및 범위

-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 개정협약 체결의 후속조치와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함.

### 가.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 인정 협약 체결의 배경 분석

-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화, 세계화, 국가 간(cross-border) 고등교육 교류, WTO/GATS 등 관련 배경 요인에 대한 분석
- 아·태 외 지역에서의 고등교육 학위 인정 협약 및 개정 현황 분석(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지중해 협약, 아랍국가,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

### 나. 아·태 지역 고등교육 학위 인정 관련 국내 고등교육 현황 분석

-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화 및 개방화 현황 분석
- 현행 외국학위 인정업무의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고등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의 질관리 체계에 대한 분석

### 다. 고등교육 학위 인정에 대한 유럽 지역 선행 사례 분석

- 리스본 협약(Lisbon Convention) 및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를 통한 유럽지역 내 고등교육 학위 인정 관련 동향 분석
- 유럽 지역 국가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on Center) 구축 및 네트워킹 전략에 대한 사례 분석
- 유럽지역 및 국가단위 고등교육 질 관리 및 평가체계의 개발 및 연계 현황에 대한 사례 분석

## 라. 아·태 지역 고등교육 학위 인정 협약 비준에 따른 후속과제

- 국가 정보 센터의 구축
- 외국 학위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탐색
-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고등교육 평가 인증 체제 구축 방안 탐색
- 고등교육 이외 분야와의 연계 방안 탐색(국가 자격 체계, 평생 교육 분야 등)

## 3.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외국 학위 인정 관련 국내외 연구 자료, 특히 UNESCO에서 발간한 고등교육 학위 인정 관련 지역별 협약, UNESCO-OECD 고등교육 질 관리 지침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
  - 국내 학위 인정 관련 사례 및 해외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함.
  - 웹 사이트와 인터넷 상의 학위 인정 관련 다양한 지원 도구와 관련 정보를 분석함.
  - 국내외 관련 법령을 분석함.
- 전문가협의회
  - 2012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UNESCO 전문가 협의회 참석 아태지역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 및 집단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함.
  - 국내 고등교육 인정 관련 학자와 실무 담당자의 면담을 통해 자료 수집함.

## Ⅱ.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 협약 체결 배경

### 1. 고등교육 분야의 주요 동향

#### 가. 고등교육의 정보화와 국제화

- 21세기 고등교육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국제화와 정보화임.
- 국경 없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국가는 무력이 아닌 지식과 정보를 무기로 다른 나라와 경쟁해야 함.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이를 전수하는 역할을 하는 대학이 국가의 경쟁력에서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정보를 수집, 분석, 저장, 유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러한 정보와 지식의 창출 능력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강병운, 2005).
- 전통적으로 대학은 지식을 창출하기도 했지만, 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해왔고, 지식기반 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대학이 정보와 지식의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박인우, 2003; Duderstadt, 2000).
-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정보화에 따른 개방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21세기에 들어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국제화는 사회적으로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고, 교육적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며, WTO, FTA 등과 같은 정치적인 환경 변화, 그리고, 유학 적자,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과 같은 경제

적인 필요성도 있음.

- 특히 세계화와 지식기반 경제가 진전됨에 따라 국제적 통용성을 지닌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인적자원의 확보와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고급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지식의 창출과 전파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에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고등교육의 목적, 기능, 전달방식에 국제적(international), 간문화적(intercultural), 세계적(global) 측면을 통합시키는 과정(the process of integrating an international, intercultural or global dimension into the purpose, functions or delivery of post-secondary education”(Knight, 2004: 11)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세부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학의 국제 교육 프로그램의 추진
  - 다문화 교육
  - 유학생 및 외국인 연구자 유치
  - 대학 내의 다언어 교육
  - 국제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 육성-졸업생의 국제기관 활동 여부
  - 국경을 초월한 교육 연구 활동 : 해외 마케팅이나 해외 분교 운영
  - 대학의 국제 인지도 향상 : Times나 상해교통대학 등이 발표하는 대학 랭킹

〈표 1〉 국제회의의 개념과 의미 요소

국제회의의 단위와 수준	국제회의의 의미	사례와 지표
교육/연구/봉사활동 (개인수준)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활동(activity)의 증가	해외 인턴십 증가 국제공동연구 증가 해외 연구용역 수주 증가
학생, 교수진 구성 및 국제화 프로그램과 조직 (조직수준)	구성요소의 국제적 다양성(composition) 증가	외국인 학생의 증가 외국인 교수의 증가 캠퍼스 내 외국연구소 증가
경영/정책의 목표와 전략 (제도수준)	국경을 넘어선 고려(deliberation)의 증대	국제적 학생 모집 외국의 저명교수 유치 정책 고등교육해외 진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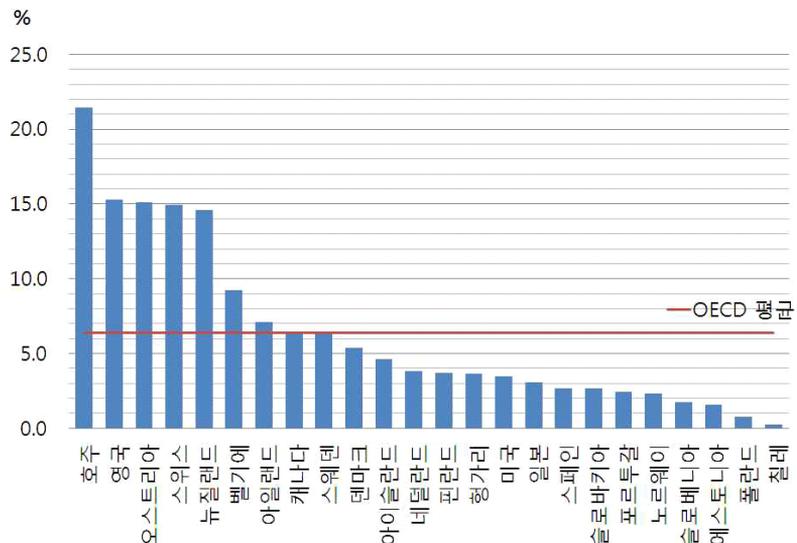
(출처: 정기오(2005))

- 정보화에 따른 원격교육의 증가로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있음. 원격교육에 의해 교육내용의 구성방식과 교육내용의 전달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국제화와 결합되어 사실상 대학교육에 있어 국경과 시·공간적 제약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김환식, 2006).
- 최근에 우리나라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아세안사이버대학’은 아시아 지역의 학생이 온라인 상에서 고등교육의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으로 국경을 넘는 이동이 불필요한 교육 환경임.

#### 나.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급격한 증가

-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cross-border higher education)」 현상은 국제화와 정보화와 더불어 최근에 더욱더 확대되고 있음.
- 국제적인 이동은 기존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자 및 프로그램, 그리고 고등교육기관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더불어 상업적 목적을 위한 고등교육 활동도 늘어나고 있음

- 2005년 OECD 자료(Vincent-Lancrin, 2005)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2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학자들의 이동도 미국에서 약 40%, 유럽지역에서 약 70% 이상이 증가하였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학생들을 유학 보내는 국가로, 매년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 교육과학기술부, 2012a).
- 학생 이동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일방향성 특징을 보이고 있음(하연섭, 문우식, 2012).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및 호주가 전 세계 유학생의 50% 이상을 유치하고, 호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영국, 스위스에서는 국제학생이 전체 대학생의 10% 이상, 대학원생의 20% 이상을 차지함.



(그림 1) 주요 국가의 고등교육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율  
(하연섭, 문우식, 2012)

-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외국학생의 수는 77% 증가하여 연평균 6.6%의 증가율을 보여 거의 모든 국가에서 유학생 수

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2005년 이후 OECD 비회원국에서 수학하는 학생의 증가율이 OECD 회원국을 상회함.
- 2000년과 비교할 때 외국학생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국가로는 호주, 칠레, 체코,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러시아 등을 들 수 있음.
-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대학생 수가 크게 증가한 고등교육의 급격한 팽창에서 찾을 수 있음. 전 세계적으로 1975년 40백만 명이었던 대학생의 수가 2009년에는 1억 65백만 명으로 증가함.
-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등교육 팽창이 매우 빠르게 진행됨.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에서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지난 5년 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이 15배 증가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OECD, 2011), 2003년 12,314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04년 Study Korea Project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 89,537명에 도달하였음.
-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 과 관련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분교 설립이 추진되었고(이병석, 채재은, 2006), 2012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추진에 따른 해외 교육기관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이 증가함에 따라 학위와 자격의 동등성, 호환성, 통용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별, 전 세계적인 협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유럽 국가들은 “볼로냐 선언(Bologna Declaration)”을 통해 고등교육 학위 구조를 학사 3년, 석사 2년, 박사 3년으로 통일하였으며, 학위의 국제 비교와 국가 간 인력 이동을 손쉽게 하고 있음. 이 선언에 전 세계의 주요 국가, 예컨대 미국, 호주, 캐나다 등도 참여하고 있음.

- UNESCO와 OECD도 모든 학생들과 당사자들이 질 높은 고등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내외 고등교육기관들의 질 보장 체제의 도입과 운영을 권고하는 「UNESCO/OECD의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보장에 관한 가이드라인(UNESCO/OECD Guidelines on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을 작성하여 발표하였음(이병식, 채재은, 2006). 이 가이드라인은 각국이 상호 인정할 수 있는 학위·자격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의 틀을 제시하고 있음.
- 국경을 넘나드는 고등교육 서비스의 이동은 교육 서비스의 성격에 있어서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김환식, 2006). 공공재의 일환으로 여겨졌던 교육 서비스는 산업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심지어 WTO 협상과 FTA 협상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는 대학과 국가는 고등교육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음.
- 교육은 국내 폐쇄경제 체제에서 국제 개방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람(교원과 학생)의 이동, 교육과정의 이동, 교육투자의 이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고, 정부와 대학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음.

## 2. 아태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고등교육 학위인정 협약 및 개정 현황

- 2012년 현재 아태지역 이외 지역에서 고등교육 학위 인정과 관련된 협약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지중해협약, 아랍국가, 유럽지역, 아프리카지역 등 5개가 있음. 이 중에서 유럽 지역의 협약 외에는 활발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없음. 지역별 협약과 관련된 웹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지중해협약 외에는 없고, 해당 지역 UNESCO에서 운영하거나, UNESCO의 Higher Education Portal을 활용하고 있음.

- 최근에 UNESCO Higher Education Portal이 이와 관련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 소개하였음.

## 가. UNESCO Higher Education Portal

- UNESCO에서 운영하고 있는 Higher Education Portal은 학위인정 협약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종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공인(Recognized)된 고등교육 기관 관련 웹 사이트 임.



(그림 2) UNESCO Higher Education Portal

(<http://www.unesco.org/new/en/education/resources/unesco-portal-to-recognized-higher-education-institutions>)

- UNESCO 포털에 참여하는 당사국이 인정 및 인가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접근 경로를 제공하며, 직접적으로 정보를 저장

및 제공하지는 않음.

- 이 웹 사이트의 목적은 고등교육기관 및 해당 국가의 학생, 고용주, 기타 이해 당사자에게 품질 보증 권한 및 최신 정보에 대한 접근 경로를 제공하는 것임.
-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참여국에 대한 모든 정보는 참여 국가의 관련 당국에 의해 관리 및 갱신되고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접할 수 있음.
- UNESCO Higher Education Portal의 국가별 게재 내용은 아래의 표에 제시된 것처럼 국가의 공인 기관, 공인된 고등교육프로그램, 해당국가 수학을 위한 조건, 고등교육 시스템, 재정지원 기회, 국가 간 고등교육, 국가정보센터 등임.
  - 해당 국가에 의해 공식 인증된 고등교육기관 목록
  - 해당 국가에 의해 인증된 고등교육 프로그램 목록
  - 유학 준비 중인 학생을 위한 정보 사이트
  -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정보 : 고등교육 체제 개요, 고등교육 단체, 관련 정부기관, 질 보증 체제
  - 해외 자격증 및 학위 인증에 관한 정보 : 절차와 관련 기관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정보
  - 국경을 넘는 고등 교육에 관한 정보
  - 국가 정보 센터
  - 기타
- 2012년 현재 참여 국가는 5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모두 47개국에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사실상 모두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음.

〈표 2〉 UNESCO Higher Education Portal 참여 지역별 국가

지역	국가
아프리카지역 (3국)	케냐,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아랍지역 (2국)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태지역 (7국)	호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태국
유럽, 북미지역 (20국)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라이텐스타인,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라틴 아메리카, 캐리비안지역 (10국)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자메이카, 멕시코, 파라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 나. 아프리카 지역 협약

- 아프리카 지역 협약은 1981년에 탄자니아 Arusha에서 “The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Certificates, Diplomas, Degrees and other Academic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in the African States”으로 채택되었음.
- 현재 29개국 중 22개국이 1981년에 날인하고, 1983년부터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다만 2012년 현재 수정 중에 있다는 정보가 UNESCO Portal에 게시되어 있음.
- 협약 관련 참고 웹 정보 :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518&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518&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 다. 아랍지역 협약

- 아랍지역 협약은 1978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the Arab States”으로 채택되었음.

- 1981년에 발효되기 시작한 협약은 당시에 18개국이 참여하였으며, 1991년까지 14개국이 인준하였음. 현재까지 이 협약과 관련된 후속 활동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협약 관련 참고 웹 정보 :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517&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517&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 라.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 협약

- 1974년 멕시코에서 “The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로 채택되었음.

- 1975년에 발표 및 발표된 이 협약에 지역의 19개국이 참여하였으며, 2005년까지 13개국이 인준하였음.

- 협약 관련 참고 웹 정보 :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512&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512&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 마. 지중해 협약

- 1976년 Nice에서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Certificat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the Arab and European States bordering on the Mediterranean”로 채택되었음.

- 1978년에 발표된 협약에 참여한 12개국 중 11개국이 승인하였음. 이 협약

이 적절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져 왔음. 가장 최근의 모임은 2005년에 “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the Arab and European States bordering on the Mediterranean”이 있었으며, 그 결과로 Mediterranean Recognition Information Centres (MERIC) Network 이 구성되었음.

- MERIC은 2004~2005년에 시범적으로 수행되었던 RecQualif MEDA를 기초로 하였음.
- MERIC의 주요 내용은 적절한 정보를 일정 기간 안에 제공, 규정된 준거와 절차에 따라 자격 인정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 정보, 조언을 제공함, 외국 학위 소지자에게 정보 제공, 국가 수준에서의 주요 정보기관 역할 수행, 다른 정보 센터와의 협력, 국가/지역 수준의 고등교육 정책 개발에 기여, 고등교육 체제에 대한 기타 정보 자료, 출판물 발간에 참여, 교육체제, 자격증 틀, 질 보장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갱신, MERIC 설립 및 운영에 기여함 등임.
- 2010년에 Mostar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활동, 그리고 이후의 활동은 확인되지 않고 있음.

○ 협약 관련 참고 웹 정보:

[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514&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http://portal.unesco.org/en/ev.php-URL_ID=13514&URL_DO=DO_TOPIC&URL_SECTION=201.html)

### Ⅲ. 국내 고등교육의 학위인정 현황

#### 1. 우리나라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화 및 개방화 현황

##### 가. 국제화의 개념과 세부 영역

- 고등교육에서 국제화는 학자나 행정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간의 합의된 정의를 찾기는 어려움(엄상현, 변기용, 2012).
- 국제화와 관련하여 이전에는 ‘국제 교육(international education)’, 혹은 ‘국제 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이라는 용어가 고등교육 부문의 국제적 측면을 지칭하는 보편적 용어였음(Knight, 2008). ‘국제교육(international education)’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종식기까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개발원조 프로젝트, 외국인 학생, 학문 및 문화 분야의 국제협약 등의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 용어였고,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냉전기 이후의 시기에 주로 유럽, 호주 등을 중심으로 나타난 고등교육 부문의 특정한 국제적 현상들(예컨대 지역별 고등교육 통합)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를 의미함.
- 최근에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국제화는 과정 중심의 정의, 즉 “고등교육의 목적, 기능, 전달방식에 국제적(international), 간문화적(intercultural), 세계적(global) 측면을 통합시키는 과정(the process of integrating an international, intercultural or global dimension into the purpose, functions or delivery of post-secondary education)”(Knight, 2004:11)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국제화의 영역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엄상현, 변기용, 2012)
  - Kehm과 Teichler(2007)의 경우 ①학생 및 교수·연구자의 이동, ②고등

교육 시스템간의 상호영향, ③교수·학습·연구내용의 국제화, ④단위 대학의 국제화 전략, ⑤지식이전, ⑥경쟁과 협력, ⑦고등교육의 국제적 차원에 대한 국가 혹은 초국적 차원의 정책의 7가지 범주로 고등교육 국제화의 하위영역을 분류하였음.

- Luijten-Lub (2007)는 ①학문적 이동 및 교환, ②재정적 측면/국경을 넘는 교육활동, 컨소시움, ③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④국제화 정책 연구의 4가지 하위 범주로 나누어 선행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음
-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에서 국제화도 주요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는 다양한 지표에 포함된 국제화 영역을 정리한 것임.
  - 연구자나 단체에 따라 영역의 수나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통적인 측면이 있음.
  - 다음의 표에서 Paige가 제시한 10개 영역이 가장 포괄적으로 국제화를 나타내고 있음. 대체적으로 국제화의 미션과 계획, 기반, 전략, 국제적 네트워크, 교육과정, 학생 및 교수 교류, 비교과 교육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 고등교육 국제화 모형 및 지표 사례 영역 비교(최정윤, 김미란, 2009)

Paige	민재형	Knight	오사카대학	IQRP	ACE
리더십	예산 관점	조직적 전략 - 지배구조 - 운영	미션 계획		상황분석
			예산, 실행	인적자원관리	목표
인프라구축	기반관점	- 지원, 서비스	지원 인프라	정책, 전략	전략
전략 및 계획	전략관점	- 인적자원개발	구조, 직원	조직 구조, 지원	체제, 조직
국제 교육의 국제화			네트워크		
국제화된 교육과정	활동관점	프로그램 전략 - 학문프로그램 - 연구	국제화 교과과정	학술 프로그램 및 학생	교육과정
외국인 학생 및 학자	이해관계자 관점		joint program		
내국 학생의 해외 연수		- 외부 관계 및 서비스 - 특별활동			
교수의 국제 활동			연구의 국제화	연구 및 학문적 협력	효과
캠퍼스 생활 및 비교과 교육과정					장래 전망
모니터링 과정					

## 나. 우리나라 고등교육 국제화 실태

### 1) 정부의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개요

- 해방 후 1949년 미국에 처음으로 6명의 국비유학생을 파견하였으며, 1950년에 UNESCO에 가입하였음
- 1955년 문교부가 외국유학 자격고시를 시행하면서부터 체계적인 유학행정이 시작되었고, 1962년 국제교육협약에 가입하면서 정부의 국제화 정책이 강화되었으며, 1977년 국비유학생제도가 시작되었음.

- 1981년 해외 유학 자유화의 요구에 의해 자비유학 시험을 폐지하고, 해외 유학의 문화를 개방하였으며, 1989년 일반국민 대상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실시되어 해외 유학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짐.
- 1994년 유학시험이 폐지되고, 1999년에 고졸이상으로 제한되었던 해외 유학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고 자율화되었음.
- 국내 대학의 국제화에 대한 관심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쟁형 대학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작되었음. 1997년에 국내 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교육프로그램 공동 운영이 허용되어 복수학위가 가능하게 되었고, 공동학위는 2005년에 법적 기반이 갖춰졌음. 1998년에는 외국대학의 분교 설립이 허용되었음.
-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의해 운영된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 KEMBA (Korean Executive MBA) 과정: 헬싱키 경제대학교(Helsinki School of Economics) 경영대학원 MBA과정과 산업정책연구원이 동 개설
  - 강남구 원격교육원(Gannam E-learning Center) : 서울시 강남구청과 미국의 스탠포드대학교 SCPD(Stanford Center for Professional Development)와의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원격 평생교육기관
  - GEMBA (Global Executive MBA) 과정: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상남경영원과 워싱턴대학교가 협약에 의해 1997년에 설립 및 운영
  - MIT와 성균관대학교의 MBA 과정: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GSB)과 MIT대학교가 공동으로 2005년 개설 및 운영
- 2004년 'Study Korea Project'를 수립하면서 2010년까지 유학생 유치 5만 명('10년)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 목표는 2008년에 조기달성하였음. 따라서, 2008년에 목표를 10만 명으로 조정하였으나, 이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음.

- 2006년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을 수립하여,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상호 학점 인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11년 국내대학 해외 진출 시 현지국가의 설립요건을 적용하도록 완화하였음. 우리나라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 국제화 프로그램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4〉 고등교육 프로그램/기관 국제화 유형(교육과학기술부, 201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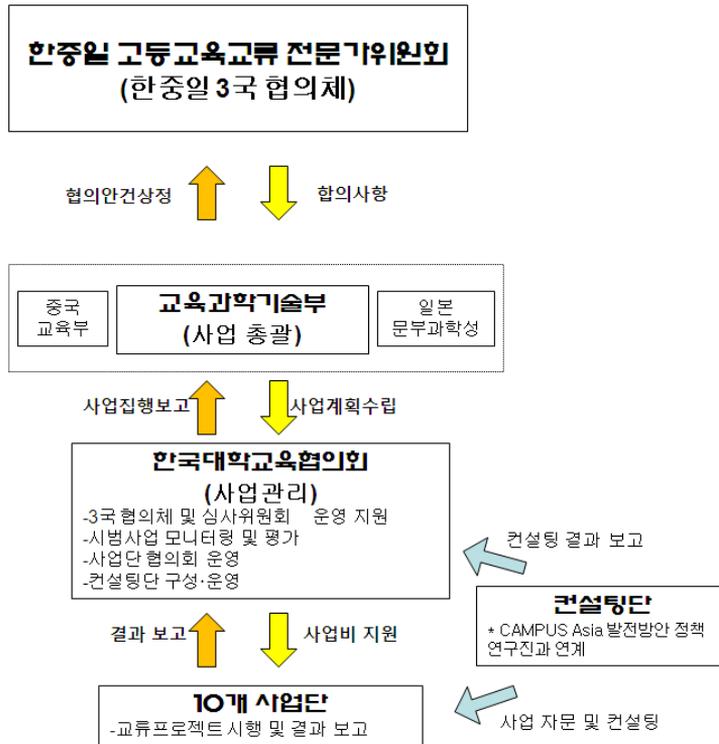
국제화 유형	주요특징	제도여부
프랜차이즈 (Franchise)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의 학위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서 국내대학에서 외국대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학위는 외국대학 명의로 수여	규제 없음
트위닝 (Twinning)	A 대학과 B 대학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A, B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하되, 학위는 A 대학에 의해서만 수여됨	규제 없음
복수/공동학 위과정 (Double/Joint Degree)	여러 국가에 있는 대학들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양측 대학 모두로부터 학위를 받는 복수 학위과정을 개설하거나 1개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것	규제 없음
아티큘레이션 (Articulation)	여러 국가에 위치한 대학간에 학점 인정 관련 협정이 체결되어 이들 대학에서 학생들이 취득한 학점이 누적적으로 학위취득에 인정되는 유형	한중일대학 간 공동복수학 위제도운영
국외교사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등 국내 학생 및 교원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국외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	규제 없음
국외분교	국내 학교법인이 현지국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설립요건을 충족(현지국가 승인)하고 교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현지국가에 설립하여 경영하는 대학	교비회계 사용금지

- 고등교육 국제화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를 위해 2008년 WCU 사업으로 우수연구인력 유치를 도모하였음.
- 2011년 우수 외국인 유치관리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여 우수 대학에는 인증, 부실 대학에는 비자발급 제한을 함으로써 유학생 질 관리를 강조하고 있음.



(그림 3) 외국인 유학생 관리, 평가 인증제 개요(교육과학기술부, 2012a)

- 2011년부터 우리나라 정부의 제안에 의해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 간의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하는 CAMPUS Asia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2년 현재 10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4) CAMPUS Asia 추진체계(교육과학기술부, 2012a)

- 2009년부터는 우리나라와 EU 국가 간의 교육협력 사업이 시작되어 2012년 현재 9개 팀이 선정되어, 학생과 교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대학의 분교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인천 송도 지구에 외국대학의 분교 유치가 확정되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특히 2012년 9월에 교육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더욱더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표 5〉 해외 대학의 분교 설립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2012a)

학교	프로그램	개교 예정	예정 학생 수
뉴욕주립대 스톤니브룩	컴퓨터과학, 기술경영 (대학원)	2012.3	407
조지메이슨대(미)	경제학, 경영학, 국제학, 바이오정보학 등	2013.3	1,500
켄트대(벨)	바이오, 환경, 식품공학	2013.3	1,020

- 우리나라 정부의 최근 고등교육 정책은 2012년에 발표한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에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아래는 이 계획에서 발표한 10가지 주요 과제임.
  - ‘고등교육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비전과 ‘우수 외국인 유학생 2020년 20만 명 유치’, ‘국대 대학의 다양한 국제화 모델 마련’ 등 두 가지 추진 목표를 설정하였음.
  - 구체적인 추진 과제는 인프라, 유치·관리, 진출·교류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별로 세부 과제를 설정하였음.

〈표 6〉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 국제화 10대 주요 정책(2012)

		주요사업	추진목표
이 비 라	1	•교육국제화특구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국제화대학 육성
		•국제화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제완화	특구 내 또는 국제화 중점추진대학에 대한 규제완화(ex. 입학 절차 등)
	2	•고등교육 국제화 지원 기구설립	국제교육진흥원의 출연연화, 한국교육원·문화원 통합을 통한 국제화 교두보 마련
	3	•국가간 고등교육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한국 고등교육 정보제공의 국가정보센터 기능 정립('14)
In - B O U N D	4	•외국인 유학생 유치	20만('20년)
		•GKS 재정지원	1,000억('15년)
	5	•석학급 해외 학자 및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	WCU-BK21 후속사업 추진('13~)
	6	•토픽 시행 횟수	6회(국내4, 국내외2/ '14년)
		•한국유학의 해외 홍보지원	20개국 유학박람회('15년)
	7	•우수교육기관유치	10개('20년)
•우수연구기관유치		60개('20년)	
Out - B O U N D	8	•해외인턴사업	사업확대 및 국가다변화, 취업과 연계
	9	•Campus Asia 교류 본격화	50개 사업단 1500명('20년)
		•EU-ICI 학생 교류	490명('20년)
	10	•국외분교설립지원	10개('20년)
		•한-아세안 사이버 대학설립 및 운영	10개국('20년)
		•한국형 ODA	지원기관 20개, 40억원('15년) 8개('15년)

## 2)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화 현황

- 우리나라의 국제화는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 왔음. 그렇지만, 국내 대학의 국제화에 대한 세밀한 조사는 최근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국내 대학은 국제화의 흐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외국 유학생을 활발히

유치하고, 자교 학생을 해외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파견하였으며, 국제 공동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국제 학술지 게재를 높이 평가하고, 외국어에 의한 강의 수를 늘려서 외국에서의 교환학생 유치를 촉진하였음.

-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 볼 때, 국내 대학생의 외국 유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2006년 기준 국내 학생은 2011년에 52%가 더 많이 외국으로 유학을 나갔으며, 외국 학생은 175%가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왔음. 외국 유학생이 국내 유학생보다 월등히 많지만, 국내 유학생 수가 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표 7〉 유학생(Inbound) 및 국내 학생의 해외 유학생 수(단위: 명)  
(교육과학기술부, 2012a)

구 분	'06	'07	'08	'09	'10	'11
유학생 수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06 대비 증가율	0.0	51.3	96.4	133.0	157.5	175.0
해외 유학생 수	190,364	217,959	216,867	240,954	251,887	289,288
'06 대비 증가율	0.0	14.5	13.9	26.6	32.3	52.0

- 국내 유학생 및 해외 유학생의 경우 전 세계적인 흐름과 동일하게 특정 국가로의 집중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국내 유학생은 대부분 중국에 집중되는 반면, 해외 유학생은 미국에 집중되고 있어서, 지역의 다변화가 필요함.

〈표 8〉 출신 국가별 국내 유학생 수

구 분	중국	일본	몽골	미국	베트남	대만	기타	계
학생수(명)	59,317	4,520	3,699	2,707	2,325	1,574	15,395	89,537
비율(%)	66.2	5.0	4.1	3.0	2.6	1.8	17.2	99.9

〈표 9〉 2011년도 국내 학생의 유학 국가(하연섭, 문우식, 2012)

과정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중국	일본	기타	계
학부	36,234	12,629	2,260	18,223	22,911	16,452	14,661	123,370
석·박사	23,386	67	2,050	1,314	4,110	3,750	6,122	40,799
어학연수	12,533	3,112	13,000	14,392	35,936	5,490	40,656	125,119
계	72,153	15,808	17,310	33,929	62,957	25,692	61,439	289,288

- 국내외 대학 간의 교환학생 수도 크게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국내 학생의 해외 교환 학생 비율은 24%가 증가하였고, 해외 학생의 유입은 76%가 증가하였음.

〈표 10〉 국내외 대학 간의 학생 교류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Inbound	9,519	14,742	16,747
Outbound	25,354	28,448	31,480

- 국내 대학의 외국인 교원은 대체적으로 4년제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대학 정보 공시 자료를 담고 있는 알리미 사이트 ([www.academyinfo.go.kr](http://www.academyinfo.go.kr))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외국인 교원은 2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1〉 최근 3년간 일반대학의 외국인 교원 현황과 증가율

연도	2010	2011	2012	총합계
남	2950	3258	3564	9772
여	1287	1379	1591	4257
합계	4237	4637	5155	14029
증가율(2010기준)		9.44	21.67	

-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외국어 강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외국어 강의에 대한 고려대학교의 다음 자료는 이러한 경향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음. 영강 비율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가 동반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교육의 국제화에서 프로그램의 국제화가 필요함.

〈표 12〉 고려대학교 연도별 영어 강의 강좌 비율과 외국인 학생 수

항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영강비율	10.2	14.4	21.9	31.3	34.8	37.7	38.1
외국인 학생 수	284	300	404	533	656	766	874

## 2. 현행 외국학위 인정업무의 현황

- 외국 학위에 대한 인정과 검증은 구분됨. 인정은 해외에서 수여받은 학위를 국내 학위에 비추어 적절한 학위와 동등한 것으로 받아주는 것을 의미하고, 검증은 수여 받은 학위가 허위가 아니라 적법한 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수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한 것을 말함.
- 해외 학위 검증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은 오세희(2011)에 의해 매우 자세히 연구되었음. 해외 학위 인증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

### 1) 해외 학위 검인정 약사

- 우리나라의 해외 학위에 대한 인정 또는 검증의 역사는 1971년에 교육법 시행령으로 외국 박사 학위 신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시작되었음.

〈표 13〉 해외학위 검증 요구 연혁(오세희, 2011:10)

연도	주요내용
1971년	교육법 시행령 제125조에 외국박사학위신고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
1974년	외국박사학위신고제도가 법제화
1982년	문교부가 ‘외국의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은자의신고에관한규칙(문교부 훈령 제379호)를 제정
1989년	해외학위 신고 업무를 산하기관에 위임
1991년	학술연구진흥재단에서 외국박사학위신고업무를 시작
199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세계 주요국의 박사학위수여대학 총람’을 발간
2007년	외국박사학위를 조사·검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2008년	고등교육법 제27조 2항이 신설되어, 해외 학위과정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법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함 외국박사학위 신고 및 해외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시행령 제정
2011	해외학위 검증 관련 제도개선방안 수립 대학 학위검증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 학위검증 가이드라인 안내
2011~13	학위업무 조회서비스를 대교협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이관하여 서비스 재개

- 1991년부터 해외 학위 신고는 학술연구진흥재단에 위임되어 실시되었고, 21세기에 들어서 외국 학위에 대한 검증이 중요해지면서 2008년 고등교육법에도 포함되었음.

## 2) 학위 인정 개요와 절차

-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의거, 학위인정의 주체는 각 대학이며, 실제로 해외학위의 진정성이 검증되면 해외학위 및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교과부는 대학의 학위인정을 위한 학위검증 체계를 마

련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음.

- 학위의 진정성이란 법적으로 유효한 기관이 발급한 학위로서, 검증대상자가 해당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위를 수여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적법성(설립의 신고, 인가, 승인여부), 정부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인정여부를 포함.
- 우리나라의 경우 학위에 대한 검증은 정부에서 직접 신고를 받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다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위임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현재에는 산하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이관되어 행해지고 있음. 학위 검증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행되다가 현재는 한국연구재단에 통합되었음.
- 교과부는 학위인정을 위한 학위검증 절차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해외학위검증업무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대학이 해외학위검증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한 자체규정을 마련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학위의 인정은 대학이 주체적으로 행하고 있는 반면, 정부에서는 인정의 세부 단계 중 주요 단계인 학위의 검증을 지원하고 있음.

### 3) 대학의 학위 인정

- 학위의 진정성 판단 및 검증책임은 대학에 있고, 검증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대학은 일정기한 내에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해명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
- 교과부의 해외 학위 인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에 제시된 것과 같음.
  - 검증내용 : 해외 취득 학위가 해당국에서 인증된 적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된 것인지 여부와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학위취득 사실 여부
  - 검증위원회의 구성 : 학위검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며, 검증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논란이 있을 경우 개최하며, 7인 이상으로 구성

- 검증절차 : (1차) 대학의 관련부서에서 학위취득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문서로 확인(이의신청 시)⇒ (2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위 취득의 사실여부를 검증

〈표 14〉 대학교의 대학원 입학자 학력조회 절차 사례(오세희, 2011)

<p>○ 학력조회 의 핵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출신 교육기관의 정부 공식인가 여부</li> <li>2. 개인별 학력(졸업, 학위)의 사실 여부</li> </ol> <p>▶ 출신대학(원)의 정부 공식인가 여부 확인 : 지원자에게 출신대학(원)의 해당 국가의 인가여부를 지원단계에서 확인토록 입학전형절차(프로세스)에 반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교 대학원 지원자 중 해외대학 출신자는 출신대학이 UNESCO 산하 IAU (International Association Universities)의 “List of Universities of the World”에서 등재여부를 확인하고, 등재되지 않은 대학 출신자는 지원서 제출시 정식인가대학 확인자료를 첨부·보완토록 요건화(모집요강에 명시)</li> <li>2. 합격자 사정 이전에 해당 대학(원)의 정식 인가여부에 대해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학과의 전형결과에 관계없이 결격으로 불합격 처리</li> </ol> <p>▶ 개인별 학력 사실여부 확인 : 국가별 학력조회 방법 다양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국 대학(원) : 고등교육학력사순보고서를 필수 제출서류로 모집요강에 명시(미제출시 합격사정 이전에 결격처리)</li> <li>2. 미국 대학(원):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에 의뢰</li> <li>3. 기타 국가 : 출신대학(원)으로 학력조회뢰서 우편 발송</li> </ol> <p>▶ 학력조회 결과 사후조치 : 미회신 건에 대한 입학취소 및 학적말소 여부 심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심의 대상 : 최초 입학학기 종료 1개월 전(7.31 / 1.31)까지 학력조회 회신이 없는 입학생 및 학력조회 결과가 제출서류와 상이한 입학생</li> <li>2. 심의 기한 : 최초 입학학기 종료전(8.31 / 2.28)</li> <li>3. 심의 위원회 : 대학원(대학원위원회)</li> <li>4. 심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합격취소 및 학적말소 여부</li> <li>② 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 여부</li> </ol> </li> </ol>
---

- 오세희(2011)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의 해외 학위 검증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조사에 응한 73개 대학 중 52개 대학이 해외 학위 인정과 관련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음.
- 검증관련 기관으로는 대교협을 22개교, 연구재단을 13개교가 이용하고 있음. 19개교는 해외의 검증기관을 이용하거나, 직접 출신학교를 연락하는 방법을 사용함.
- 신입학과 편입학 시 70.5%가 해외 학위의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 이병식, 채재은(2006).의 연구에 의하면 해외 학위의 인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외국인 학생들의 학위(또는 학력)를 인정할 때 해당국의 학위(또는 학력)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대학 자체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에 의거하여 국내와 동일하게 12년 초중등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대학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원 석사 과정에의 입학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인정하는 것임.
  - 외국인 학생이 소지한 학력 인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수의 의견 및 타 대학의 사례를 참조하여 결정하고 있음.

#### 4) 해외 학위 검증 관련 법령

- 외국 학위와 관련된 현행 법적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7조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박사 학위로 한정되어 있음.
- 고등교육법에는 외국 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 현황,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 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여 국가 정보 시스템(National Information Center)의 법적 근거

를 제공하고 있음.

〈표 15〉 외국 박사학위 신고 관련 법령과 규칙

**고등교육법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8.2.29).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신설 2008. 3. 28).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국한 날(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29., 2008. 2. 29).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장 민간위탁사항 제44조 2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박사학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1990. 12. 18 신설)’는 제 45조 제2항으로 개정되어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음.
- 현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자체적으로 ‘외국박사학위 신고에 관한 운영규칙’(2009. 9. 13 제정)에 의거하여 외국박사학위 신고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정하고, 더불어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관련기관 및 감독체계

### 5)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 및 조회서비스

- 고등교육법 제 27조에 의거하여, 자국민이 외국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는 한국연구재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학위수여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 조회 서비스는 2007년도부터 대교협에서 제공하였으나, 2011년부터 한국연구재단으로 이관되었음.
- 조회대상 학위 : 해외에서 취득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
- 조회범위 : 해당학위를 수여한 기관의 학위수여 자격(인가 및 인증 등), 해당인에게 학위가 수여된 사실
- 이용가능 기관 : 정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 기관별 연계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기관간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표 16〉 최근 10년간 해외박사 취득(신고자) 현황(오세희, 2011)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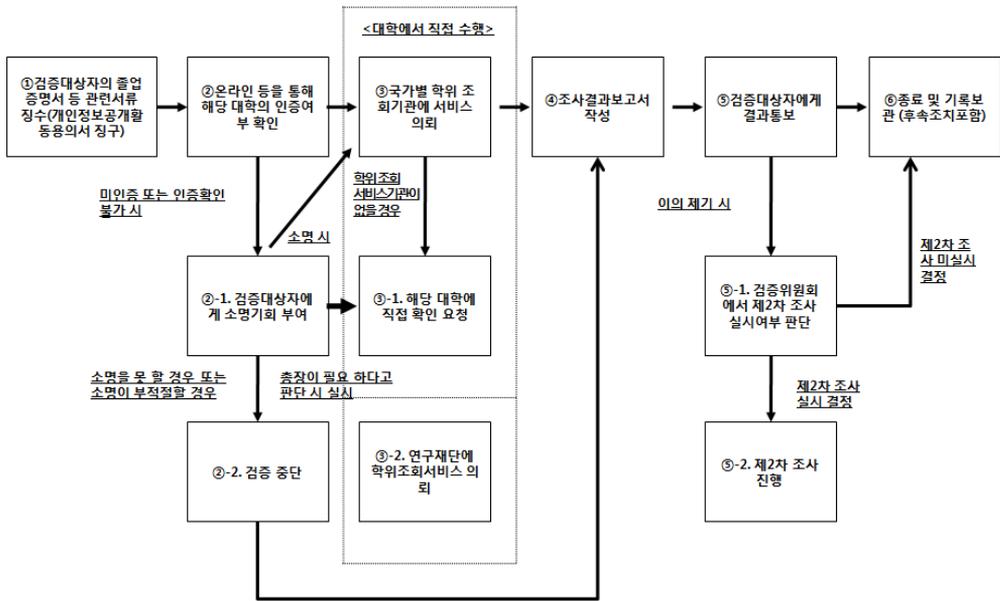
연도별	해외박사학위 취득자		
	인문계(%)	이공계(%)	합계
합계	1,822	1,463	3,285
2008	778(55.5%)	624(44.5%)	1,402
2009	711(57.0%)	537(43.0%)	1,248
2010	333(52.4%)	302(47.6%)	635

### 6) 해외 학위 검증 지침서(오세희, 2011)

- 오세희(2011)의 연구에서는 해외 학위 검증과 관련하여 업무 지침서를 연구의 결과로 제시하였음.
- 학위 검증은 학위 취득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인 1차 조사와 이 조사를 바탕으로 2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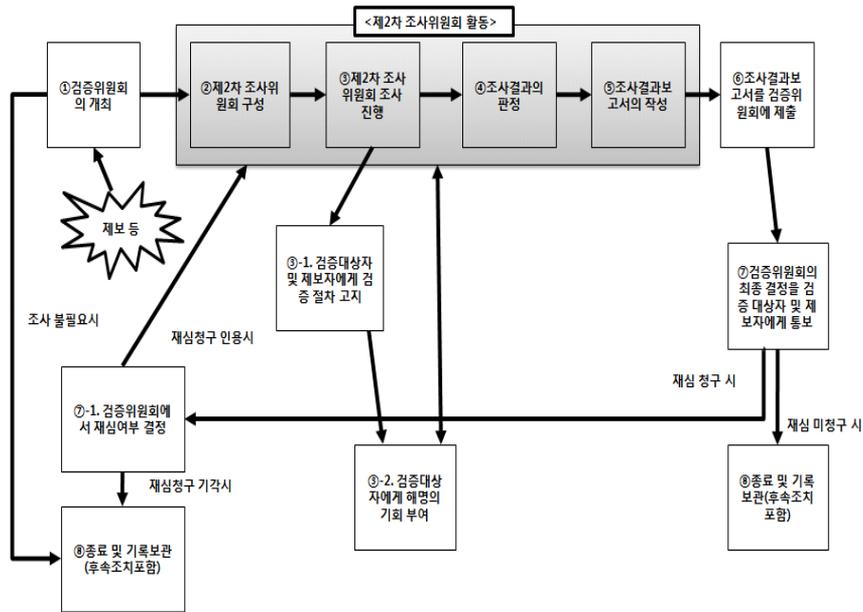
취득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공식적인 조사 및 판단을 의미하는 2차 조사로 이루어짐.

- 1차 조사에서 학위 조회 서비스는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검증 대상자가 보고한 학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을 의미함.
- 1차 조사는 검증대상자의 관련 서류 접수, 온라인을 통한 대학의 인증 여부 확인, 국가별 학위 조회 기관에 서비스 의뢰,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결과 통보로 이루어짐.



(그림 5) 1차 조사 주요 절차(오세희, 2011)

- 2차 조사는 검증위원회를 개최,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조사 결과의 판정 및 보고서 작성,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위원회의 재심 여부 결정, 종료 및 후속 조치 등으로 구성됨.



(그림 6) 2차 조사 주요 절차(오세희, 2011)

### 3. 현행 고등교육 기관 및 프로그램의 질 관리 체계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에 대해서 거의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대학에 적용할 질 관리 체제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이병석, 채재은, 2006).
- 고등교육의 질 관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부터 한국대학교육협회가 회원대학들에 대한 기관평가 및 학문분야 평가를 실시하였고, 지난 10년간 의학, 공학 등 자격과 연계된 학문분야를 평가하는 기관들이 새롭게 생겨났음.
- 우리나라 대학 관련 평가는 그 목적, 범위, 평가 주체간의 역할 설정 등이 불명확하며,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도 없는 등 전반적으로 고등교육의 질 관리가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못 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정부는 대학의 자체평가 실시 의무화, 대학의 정보 공시 법제화, 그리고 대학기관평가 인증제 등을 실시하여 고등교육의 질 관리를 추구하고 있음.

〈표 17〉 우리나라 고등교육 질 관리 관련 제도

과제		내용	시기
자체평가	법적기반 마련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신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	2007~ 2008
	최초 자체평가 실시	4년제 대학(260개교) 및 전문대학(150개교) 최초 자체평가 실시 완료	2009~ 2010
정보공시	법적기반 마련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제정 제정	2007~ 2008
	대국민 서비스 개시	대학알리미 싸이트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시	2008~
	총괄관리기관 지정	대교협을 총괄관리기관으로 지정 항목별 관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2011~
평가인증	법적기반 마련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신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7~ 2008
	인정기관심의위원회 구성	정부인정기관 지정여부, 유효기간, 지정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심의	2009~
	기관평가인증 정부인정	대학 기관평가인증기관으로 대교협 지정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기관으로 전문대교협 지정	2009~ 2010
	프로그램평가인증 정부인정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정심사 진행 간호교육평가원, 건축학교육인증원, 공학교육인증원 정부인정기관 지정	2010~
	인증결과 활용	인증결과를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반영 예정	2014~

## 가. 대학 자체평가

### 1) 개요

- 대학 자체평가는 2007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새로운 고등교육 질 관리체제로 2008년 2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었음. 이 법에 의해 대학은 자체평가를 매 2년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 대학 자체평가는 「고등교육기관의 대학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이하 “교육·연구 등”이라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대학 자체평가는 정보공시제와 연계되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이 법에 규정된 항목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고, 이 항목 중에 “모든 고등교육기관들이 2009년도부터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정보공시제와 자체평가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대학 자체평가는 기존에 우리나라 대학이 받아왔던 대교협의 기관평가, 대학종합평가와는 달리 대학평가에 대한 기준을 이전처럼 전체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대학은 정보공시제에서 공개하게 되어 있는 기본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하되,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음. 따라서, 대학 자체평가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의 스스로 질적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평가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

### 2) 목적

- 대학 자체평가의 목적은 개별 대학이 질적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향상하

는 것으로 ‘고등교육기관의 대학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자체평가의 목적을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대학의 이러한 노력은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려는 목적도 있음. 「고등교육법」(법률 제8638호, 2007.10.17 공포, 2008. 4.18. 시행) 제11조의 2에서는 “④[재정사업과 연계]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3) 추진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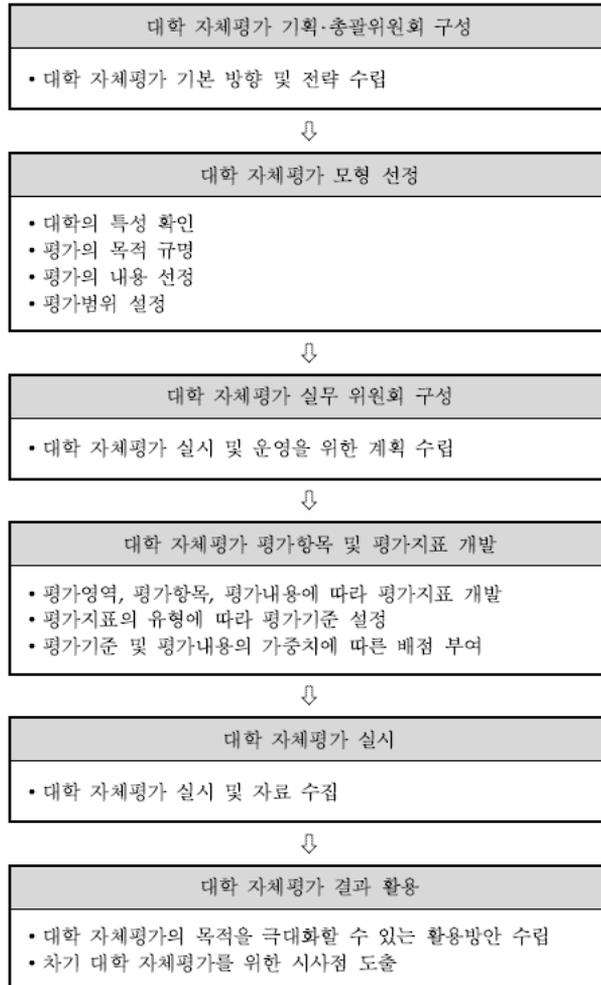
- 대학 자체평가의 추진 주체는 기본적으로 개별대학교이고, 각 대학은 자체평가 실시에 있어서 이전과는 달리 많은 자율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의 계획, 모형개발, 지표 선정 등과 같은 업무를 스스로 수행해야 함.
- 이러한 이유에서 각 대학은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있음. 「고등교육기관의 대학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는 “①학교의 장은 자체평가의 기획·운영·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두어야 하며, ②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음.

### 4) 추진 절차

- 대학의 자체평가에 대한 절차는 규정된 것이 없고, 고등교육기관의 대학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③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대학 자체평가를 위한 모형 개발을 연구한 성태제 등(2009)은 다음과 같

이 자체평가 절차를 제시하였음

- 대학은 자체평가를 위한 기획·총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위원회에서 는 자체평가의 전반적인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 대학 자체평가의 모형을 선정한다. 대학의 특성, 평가의 목적, 평가의 내용, 평가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학에 적합한 모형을 구성한다.
- 대학 자체평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실무위원회는 수립된 방향과 전략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대학 자체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내용 등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더불어, 각 평가지표마다 평가기준도 설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한다.
- 대학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설정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점수를 산정한다.
- 대학 자체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처음 설정한 목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도 도출한다.



(그림 7) 대학 자체평가 절차(성태제 등(2009:169))

## 5) 평가 내용

- 대학 자체평가는 정보공시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록 평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공시항목)을 필수지표로 채택할 수밖에 없음.
- 각 대학은 특성과 발전전략을 반영한 선택 지표를 이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음. 성태제 등(2009)은 대학 자체평가 평가항목을 13개의 정보공시 항목과 대학 자체평가 시범대학 운영 결과 및 외부 평가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회의와 중앙일보의 평가항목을 종합하여 정보공시 항목 외에 9개의 항목을 추가하여 대학 자체평가 평가항목을 총 22개로 제안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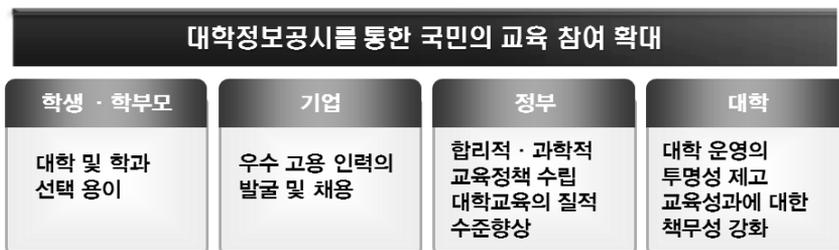
〈표 18〉 대학 자체평가 평가항목(성태제 등, 2009:184)

구분	평가항목
정보공시 항목 (13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li> <li>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li> <li>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li> <li>4. 충원율, 재학생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li> <li>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 진로에 관한 사항</li> <li>6. 전임교수 현황에 관한 사항</li> <li>7. 전임교수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li> <li>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li> <li>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li> <li>10. 학교발전 계획 및 특성화계획</li> <li>11. 교수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li> <li>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li> <li>13. 그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li> </ol>
대학 자체 개발 평가 항목 (9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 교수 학습, 학생 지원</li> <li>15. 학생교육 연구성과 실적</li> <li>16. 강의평가</li> <li>17. 대학 만족도 및 평판도</li> <li>18. 행정서비스</li> <li>19. 경영목표 수립 및 실행</li> <li>20. 국제화</li> <li>2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li> <li>22. 복지 및 문화시설</li> </ol>

## 나. 대학정보공시제

### 1) 목적

- 대학정보공시제란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 상황 및 교육·연구여건에 관한 주요정보를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탑재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함.
-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된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취지에 따라, 학생·학부모, 산업체, 정부 등의 학교선택, 산학협력 및 직원채용, 정책집행 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제공하여,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과 아울러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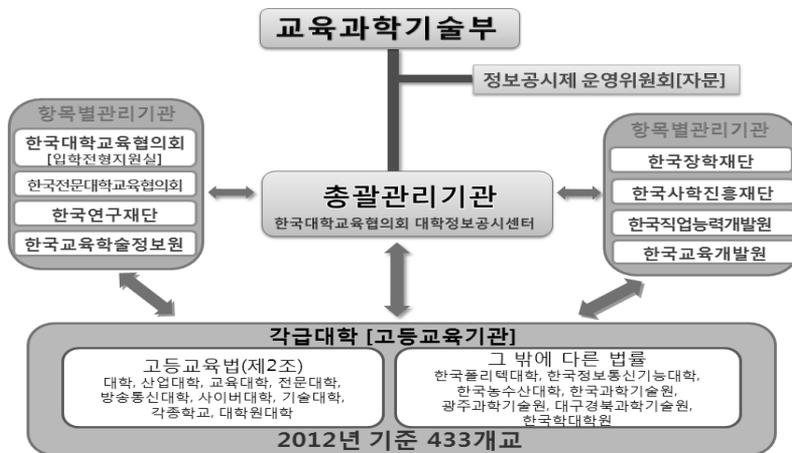
(그림 8) 대학정보공시제의 수요자별 목적(교육과학기술부, 2012b)

- 대학의 주요정보(취업률,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등)공개로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대학 간 경쟁을 통한 질 제고를 촉진하고 지속적 대학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
- 2008년 12월에 공포된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대학정보공시제의 자료가 대학자체평가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이영학, 2008).

## 2) 추진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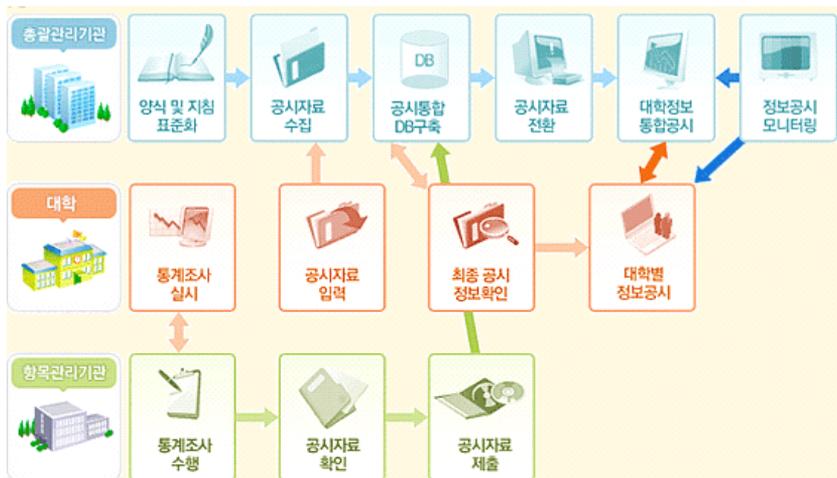
- 대학정보공시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며, 정보공시제 운영위원회의 자문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의 자료 수합 및 알리미 사이트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공시되는 정보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규정된 내용으로 하며, 정보의 제공은 기본적으로 개별 대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9) 대학정보공시제 추진체제(교육과학기술부, 2012b)

### 3) 추진과정

- 교과부와 대학교육협의회 정보공시센터에서는 양식 및 지침의 표준화, 공시자료 수집, DB 구축, 공시자료 전환, 통합 공시, 모니터링 등의 작업을 수행함.
- 대학은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수합된 자료를 입력하고, 최종 공시된 정보 확인함.



(그림 10) 대학정보공시제 추진과정(대학정보공시센터, 2012)

### 4) 2012년도 대학정보 공시 항목

- 대학정보공시제의 공시 항목은 법에 의해 규정되는데, 매년 항목이 추가되고 있음.
- 2012년도 대학정보공시항목은 13항목에 72개 세부 내용으로 되어 있음.
- 대학정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공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 가능함.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자료를 대학별, 항목별 등으로 구분하여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표 19> 2012년도 대학정보공시항목(교육과학기술부, 201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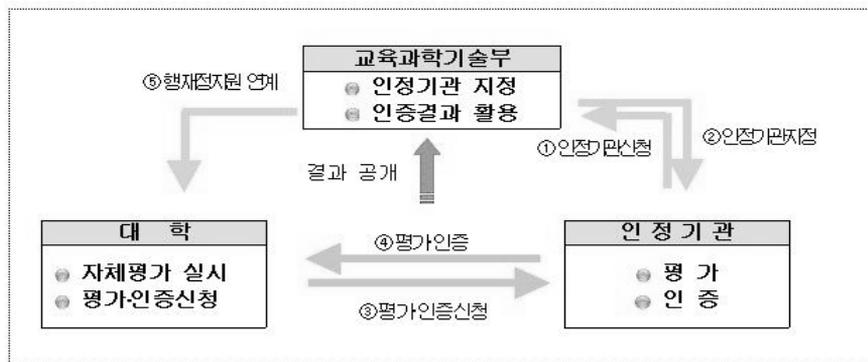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내용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가. 학교규칙
	나. 학교규칙 외 학사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 기준
	나.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가. 대학입학(편입학)전형 시행계획
	나. 모집 요강(편입학 포함)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다. 신입생 충원 현황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마. 재적 학생 현황
	바. 외국인 학생 현황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가. 졸업생 현황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다. 전임교원 확보율
7.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라.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가.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나. 저(著)·역(譯)서 실적
	가.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나. 기성회회계 예·결산 현황
	다. 발전기금 예·결산 현황
	라. 예·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마. 법인회계 예·결산 현황
	바. 교비회계 예·결산 현황
	사. 적립금 현황
	아. 기부금 현황
	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차. 등록금 현황
	카.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 현황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내용
10.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가. 연구비 수혜 실적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다. 장학금 수혜 현황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 현황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자.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 현황
	차.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카.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타.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파.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하.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거.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가. 장서 보유 현황
나. 도서관 예산 현황	
다. 연구시설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정관
	나. 법인의 임원 현황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마. 기숙사 수용 현황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사. 직원 현황
	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차. 시간강사 강의료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타. 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

## 다. 대학기관평가 인증제

### 1) 개요

- 기관평가인증(accreditation)이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임.
- 인증의 대상은 대학 일부분이나 프로그램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기관 운용 전반이고, 대학이 기관평가인증기구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판단을 활용하며, 기관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부여함.



(그림 11) 대학기관평가인증제 개요(교육과학기술부, 2012b)

- 인증의 획득 대학이란 대학경영과 교육을 구성하는 제 요소(대학사명,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고등교육 관계 법령과 대학이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질을 보증할 수 있는 최소요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
- 교과부는 평가인증 기관의 신청에 의해 정부인정기관 지정을 하며, 5년을

주기로 재인정하고, 인증결과는 정부의 각종 행·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대학은 평가인증을 신청한 후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기관평가인증제는 다음과 같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2007.10 신설)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2007.5 제정)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08.11 제정)
  - 『고등교육기관의자체평가에관한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 2008.12 제정)
  -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1163호: 2008.12 제정)
- 위의 법률에 의해 대학 자체평가가 의무화되고 기관평가인증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이하 평가원)과 같은 다양한 기관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인정을 획득하여 2011년부터 기관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

〈표 20〉 기관평가인증 기관 현황

평가인증기관	분야	정부인정여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원)	일반대학 평가	인정 (2010)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직업교육평가원)	전문대학 평가	인정 (2010)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대학평가·인증 결과를 2014년부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계획임.

## 2) 기본 방향 및 목적

- 기관평가인증제는 이전의 2주기에 걸쳐 실시되었던 대학종합평가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방향을 보임.
  - 대학의 일반적인 평가 준거를 선택적 활용 및 추가를 통해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음.
  - 평가를 받는 대학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참평가(authentic assessment)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대학의 평가부담을 경감함.
  - 대학의 강점을 살리고, 개선 및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실시함.
  - 우수 사례 발굴, 정보공유, 평가교과의 정부 정책 활용 등을 통한 평가 결과의 생산적 활용을 유도함.
- 기관평가 인증제의 목적은 세계적인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요건과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하여 국제적인 통용성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 질 보증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음.
  - 제3자 외부평가를 통한 대학교육의 질 보증
  - 대학 자율성 확대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 제고
  - 대학교육 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대학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증대

## 3) 평가 내용 및 인증 기준

- 대학기관평가의 평가 내용은 6개의 평가영역, 17평가부문, 54개 평가준거로 이루어져 있음. 평가준거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평가부문

에 대한 평가가 결정되고, 평가부분의 결과에 의거하여 평가영역의 평가가 결정됨.

〈표 21〉 대학기관평가 인증 평가영역, 평가부분, 평가준거

평가영역	평가부분	평가준거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사명 및 교육목표	1
	발전계획 및 특성화	2
	자체평가	1
교육	교육과정	7
	교수·학습	3
	학사관리	4
	교육성과	2
대학 구성원	교수	8
	직원	3
	학생	4
교육시설	교육기본시설	4
	교육지원시설	3
	도서관	1
대학 재정 및 경영	재정 확보	4
	재정 편성 및 경영	3
	감사	2
사회봉사	사회봉사	2

○ 평가준거에는 교육여건 2개, 교육만족도 2개, 재정건전성 1개, 교육지원 1개 등 총 6개의 필수평가준거가 있으며, 대학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필수평가준거의 최소요구수준을 충족해야 함.

- 전임교원확보율
-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 교사확보율
- 교육비 환원율
- 장학금 비율

- 대학은 자체적으로 평가준거를 평가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포함시킬 수 있음.
- 인증유형은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 등 네 가지로 구분함.
  - 인증: 6개의 필수평가기준과 6개의 평가영역을 모두 충족하면 5년간 인증함.
  - 조건부인증: 6개 필수평가기준을 충족하고, 5개 평가영역을 충족하되 1개 평가영역이 미흡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1년을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해당 부분에 대해 충족 판정을 받으면 5년 인증함.
  - 인증유예: 5개 이상의 필수평가기준을 충족하고, 4개 평가영역 충족 및 2개 평가영역 미흡 판정 또는 5개 평가영역 충족 및 1개 평가영역 미충족 판정시에는 인증을 유예하고 2년 후 재평가 실시함.
  - 불인증: 위의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불인증 판정하고 2년 후에 재신청 기회 허용 함.
- 2011년도에 실시된 대학 기관평가인증제는 일반대학의 경우 30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고, 2012년에 30개 대학이 추가로 인증받았다.

## IV. 고등교육 학위인정 유럽 사례

### 1. 유럽지역의 리스본 협약 및 볼로냐 프로세스

#### 가. Lisbon 이전의 학위 인증 협약

- 1953 ~1990: Council of Europe(COE)과 UNESCO에 의해 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학위 인정과 관련된 다양한 협약이 이루어졌음.

〈표 22〉 유럽 지역 학위 인증 관련 주요 협약

연도	협약
197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in the Arab and European States bordering on the Mediterranean
1979	UNESCO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States belonging to the Europe Region
1984	National Academic Recognition Information Centres (The NARIC Network), European Commission
1993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and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1994	The European Network of National Information Centres on academic mobility and recognition (the ENIC Network)

#### 나. Lisbon 협약의 배경

- Lisbon 협약 이전에도 유럽지역에서는 학위 인증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 협약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종합적으로 체계화되었음. 더불어 Lisbon 협약이 체결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제시되었음.

- 교육의 국제적 차원 증가

- 고등교육의 질을 강조하는 분위기
- 교직원, 학생, 연구자, 전문가 등의 이동 증가
- 인정 실무의 변화

## 다. Lisbon 협약 내용

- 1997년 Portugal Lisbon에서 COE와 UNESCO가 합동으로 학위 인정 협약을 체결함. 총 57개국이 참여하여 55개국이 날인하고, 53개국이 인준함, 2개국은 날인도 승인도 하지 않았으나 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음.
- Lisbon 협약의 원문은 Council of Europe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및 확인 가능하며(<http://conventions.coe.int/Treaty/Commun/QueVoulezVous.asp?NT=165&CL=ENG>),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학위를 가진 사람에게는 동일한 접근 허용
  - 자격 평가와 인정 절차와 준거를 투명하고, 신뢰롭고, 일관성 있도록 함.
  - 자격 증명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정보는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며, 신청자가 관련 서류나 정보를 해당기관에 요청할 때 정부는 그 기관에게 이러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기관은 성실히 이 정보와 서류를 제공해야 함. 신청자가 자격에 부합되는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책임은 평가 기관에 있음. 자격에 대한 평가는 공정한 방식으로 적당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함.
  - 자격의 인정을 촉진하기 위해 각 국은 교육 체제에 대한 적절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한 국가에서 고등교육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에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다른 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입학은 동일하게 허용해야 함.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 실질적인 차이: 주요한 개념이지만 정의하기 어려움, 자격과 인정의 기

능과 목적을 고려할 때의 실질적인 차이. 단순히 형식의 차이는 아니며, 학습 결과에서의 차이를 의미함

- 한 국가에서의 수학 기간을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함.
- 한 국가에서 획득한 자격은 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함.
- 각 국은 자신의 고등교육 체제에 속하는 기관과 이 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2개의 실행 기구 설정 : Committee of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European Region, 그리고 European Network of National Information Centres > ENIC이 설립된 실질적인 협약임.
- 위원회에서는 외국 자격의 평가 기준과 절차에 대한 권고, 구체적인 지침 등을 심의 및 채택함. 다음의 문서를 채택함: Recommendation on International Access Qualifications (1999), Recommendation on Criteria and Procedures for the Assessment of Foreign Qualifications (2001, 2010), Code of Good Practice in the Provision of Transnational Education (2001, 2007), Recognition of Joint Degrees 2004
- Lisbon 협약은 이후 유럽지역의 학위인정과 관련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Bologna Process에서 유일하게 언급된 문서임.

## **라.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

### **1) 개요**

- 볼로냐 프로세스는 1998년 독일, 이태리, 영국, 프랑스 교육장관들이 유럽 고등교육체제의 단일화를 위해 채택한 소르본 선언(Sorbonne Declaration)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에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해 내용이 수정되었음.
- 볼로냐 프로세스로 이름이 붙여진 것은 1999년 유럽 29개국의 교육장관

이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2010년까지 유럽 공통의 고등교육지역(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확립을 골자로 하는 볼로냐 선언(Bologna Declaration)에 공동 서명함으로써 본격화되었기 때문임.

- 볼로냐 프로세스(1999년)의 주요 내용은 European area of Higher Education 을 이룩하기 위해
  - 알기 쉽고 비교 가능한 학위와 졸업장 보조 자료 사용
  - 2 사이클(학부와 석사) 기반의 시스템 채용. 각 사이클은 최소 3년 이상의 수학기간 설정
  - 학점 체제(ECTS) 수립 및 채용

## 2) 주요 회의 및 내용

- 1998년 소르본 선언 이후 매 2년마다 정기적인 유럽지역 장관 회의가 개최되어, 유럽 고등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공동 노력이 진행 중임.
- 2001년 프라하 회의에서는 볼로냐 선언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유럽 33개국 교육장관이 모여 동 선언의 목적과 내용을 재확인함.
- 특히 2003년 베를린 회의에서는 향후 2년 간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 고등교육의 품질보증, 학위체제의 통일성 확립 등을 선정하였음.
- 이 프로세스를 통해 Three cycle system(학부, 석사, 박사) 채용, 질 보증을 위한 국가별 독립 평가 기관 설립, European Credit Transfer and Accumulation System(ECTS) 채용 등이 이루어짐.
- ECTS는 학생이 기대하는 학습 결과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학습량에 기초하고 있으며, 학습량은 기대되는 학습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강의, 세미나, 프로젝트, 실습, 자습과 시험을 포함한 모든 학습활동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을 의미함. 1 ECTS는 25~30시간 학습량을 의미하고, 1년에 60ECTS(1500~1800시간)을 기본으로 정함.
- 2010년 3월 11~12일에 Budapest Vienna에서 회의를 갖고, 1999년 Bologna

선언에서 설정했던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EHEA)의 개시를 선언함. 이 선언에 47개국이 서명함.

〈표 23〉 볼로냐 프로세스 주요 회의와 내용

회의명칭	주요 내용
Sorbonne 선언(Sorbonne Declaration)(1998)	1998년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이 모임을 가졌으며, 이후 볼로냐 프로세스의 기반이 됨. 자격과 학업 사이클에 대한 공동 체제로 점진적인 통합을 통한 프로그램과 자격 인정의 국제적 투명성 향상. 유럽 지역에서의 학생과 교수자의 이동 촉진,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 대한 공동 학위 체제 설계함.
볼로냐 선언(Bologna Declaration)	1999년 유럽 29개국의 교육장관이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2010년까지 유럽 공통의 고등교육지역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확립을 골자로 하는 볼로냐 선언(Bologna Declaration)에 공동 서명함
Prague Communiqué (2001)	2001년에 모임, 평생 학습 개발, 고등교육기관과 학생의 참여, 유럽 고등교육 영역의 매력성 증진 등의 내용을 합의함.
Berlin Communiqué (2003)	기관, 국가, 유럽 수준에서의 질 보증 개발, 2 사이클 체제 실행, 학위와 수학 기간 인정, 유럽 고등교육 영역을 위한 자격 틀 수정, 박사 과정을 세 번째 사이클로 추가, 유럽 고등교육 영역과 유럽 연구 영역간의 밀접한 연계 촉진 등을 합의함.
Bergen Communiqué (2005)	5개국의 추가 참여 결정. 사회적 차원 강화 및 이동에 대한 장애물 제거, ENQA 보고서에서 제안된 질 보장을 위한 표준과 지침 시행, 유럽 고등교육 영역을 위한 질 체제와 개별 국가의 자격 체제간의 호환성 개발, 고등교육에서의 유연한 학습 경로 창출 등을 합의함.
London Communiqué (2007)	유럽 질 보장 등록(European Quality Assurance Register (EQAR)) 창설. 유럽 고등교육 영역을 위한 질 체제와 개별 국가의 자격 체제간의 호환성 마련 종료, 학생과 교직원의 이동에 장애물 제거를 위한 국가별 조치 약속, 사회적 차원에 대한 국가 정책 추진 및 보고 약속함
Leuven/Louvain la Neuve Communiqué (2009)	10년 내에 고등교육에서의 전체적인 참여 전체적인 참여 결정함.
Budapest Vienna (2010)	1999년 Bologna 선언에서 설정했던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EHEA)의 개시를 선언함. 이 선언에 47개국이 서명함.

### 3) 불로나 프로세스의 의의

- 국가간 학위의 비교 및 호환의 용이성 증진
  - 유럽 대학 간 학점의 누적 및 호환을 위한 ECTS 체제(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의 원활한 운영과 학문적·실용적 측면에서 학위의 투명성 및 질을 담보하는 학위설명서(Diploma Supplement)의 활용 시작됨.
  - 학위설명서란 고등교육기관에서 수여한 학위의 성격, 수준, 맥락 등에 관한 표준적·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학위에 대한 설명서로서, 학위의 질이 학교와 노동시장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것임.
- 통일적인 학위구조 구축
  -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의 수학을 요건으로 하며, 학위구조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학사학위와, 대학원 과정인 석·박사학위의 두 가지 구조로 통일하였음.
- 고등교육의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를 위한 공동 협력
  - 품질보증을 위한 공통된 기준과 방법을 설정하고 국가적인 교육품질보증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짐.
- 학생과 교사·교수, 연구자들의 국가간 이동 촉진 및 유럽 고등교육 공동체 확립을 위한 긴밀한 국가간 협력 연계망이 구축되었음.

## 2. 유럽지역 국가정보센터(NIC) 구축 및 네트워킹

### 가. 개요

- 리스본 협약을 이행하고, 인정 관련 정책과 실재를 개발하기 위해 유럽

의회와 유네스코는 European Network of National Information Centres (ENIC 네트워크)를 1994년에 구축함.

- Council of Europe과 UNESCO/CEPES가 공동으로 ENIC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는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의 국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ENIC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 해외 졸업장, 학위, 기타의 자격증에 대한 인정
  - 해외 국가 및 ENIC 구성원 국가의 교육 체제
  - 경비 용자, 장학금, 이동과 학위 등가 등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 등을 포함하는 유학 기회
- ENIC 매년 의장과 2명의 부의장을 선출하되 순환직임.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이 협약 위원회에서 논의될 모든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현재 Listserv를 통해 300여명이 매일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졸업장 보충 자료, 차이점,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질 보장, 자격 기본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2012년 현재 European Area of Recognition Manual이 추진 중에 있음. 이것은 자격에 대한 공정한 인정을 위한 실무 지침으로 네덜란드의 주도하여 10개국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V 1.0이 만들어졌음 ([http://www.eurorecognition.eu/manual/EAR\\_manual\\_v\\_1.0.pdf](http://www.eurorecognition.eu/manual/EAR_manual_v_1.0.pdf))
- NARIC Network (National Academic Recognition Information Centres): Europe Commission이 주도하여 1984년에 만들어졌음.
  - 이 네트워크는 유럽 연합, 유럽 경제 공동체, 그리고 Turkey에서 수학한 학생들의 졸업장과 수학기간에 대한 학문적 인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모든 국가는 자체적인 센터를 통해 학생, 교수, 연구자에게 다른 나라에서 획득한 졸업장과 수학 기간의 학문적 인정과 관련된 정보와 조언

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이동을 조장함.

- 각국의 센터는 각국의 교육부에 의해 지정되며, 국가에 따라 기관의 성격이나 업무가 다소 다를 수는 있음.

## 나. ENIC-NARIC.net 웹사이트

- European Commission, Council of Europe, UNESCO/CEPES가 ENIC 및 NARIC에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구축한 웹사이트로 각국이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게시함.
- 이 사이트에 제공되는 국가별 정보는 다음과 같음.
  - 각 국가의 National Information Centres(NIC)
  - 국가 교육 담당 부서
  - 교육체제
  - 대학 교육
  - 질 보장
  - 중등 이후 비 대학 교육
  - 인정된 고등 교육 기관
  - 외국 자격의 인정 정책과 절차
  - 자격 수여 틀
  - 자체 평가 보고서
  - 졸업장 보충 정보
- 이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자들로 이루어진 ENIC-NARIC Network가 구축되어 있음. 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이 이루어짐.
  - 자격증 평가와 국가 자격증 체제에 대한 정보 교환
  - 인정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포럼 제공, 네트워크 소속 국가의 체제, 자격증, 인정 기준,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지식 증진.

- 우수 사례의 모방, 설정, 증진, the Council of Europe/UNESCO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European Region (Lisbon Recognition Convention)에 들어 있는 준거와 절차에 따라 인정 방법의 개발.
- 적절한 DB, 정보 자료 등의 개발을 통한 국가 센터 지원 정보도구의 향상.
- ENIC과 NARIC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특정 집단에 적합하도록 구조와 조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침서를 제공
- 인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정보의 생성, 선택, 질 보장, 제시, 제공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전략 개발.
- 국가별 ENIC과 NARIC의 역량 개발과 연락을 통한 두 네트워크의 기능을 강화.

### 3. 유럽지역 및 국가단위 고등교육 질 관리 및 평가체계

-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논의는 1960대에 UNESCO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자격인증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UNESCO Conventions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음
- 협약의 목적은 고등교육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학(원)생들과 전문가들(professionals)이 다른 회원국에서 자국에서 획득한 자격이나 학위를 별도로 인증 받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에 대한 상호 인정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음.
- 협약의 후속조치로서 1970년과 1980년 사이에 남미 및 커리비안 (Caribbean) 지역 협약(1975년), 아랍지역 협약(1978년), 유럽 지역 협약 (1979년), 아프리카 지역 협약(198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약(1983년)

등 총 5개의 협약이 비준되었음(김신일, 2002).

- 추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화된 협약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1993년에 개최된 제27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고등교육 이수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국제적 권고안(International Recommenda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and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이 채택되었음. 이 권고안은 UNESCO/OECD 가이드라인의 원형으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유네스코는 2002년 10월 ‘자격 관련 국제적 질 보장, 인증 및 인정에 관한 국제 포럼’을 개최하였음(이병식, 채재은, 2006).

## 가. UNESCO/OECD 질 보장 가이드라인

- 2003년 하반기에 개최된 제32차 UNESCO 총회와 OECD의 교육위원회 및 CERI 운영위원회에서 「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지난 10년간 교통과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활동이 괄목할만하게 늘어났음. 학생과 전문 인력의 국가 간 이동, 고등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의 국가 간 이동이 급격히 확대되었음.
  - 급격한 이동의 증가에 비해 국경을 넘는 교육활동의 질 관리를 위한 국제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여 학생 등 교육소비자들에게 예기치 못했던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짐.
  - 전 세계의 무역 자유화를 목적으로 WTO(세계무역기구)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의 교육 서비스 분야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 체제를 국제적 수준에서 마련할 필요성대두
- 2005년 하반기에 개최된 제33차 UNESCO 총회, 그리고 2005년 10월에 개최된 OECD 교육위원회와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OECD 이사회를 거쳐 질 관리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되었음(UNESCO · OECD, 2005).

-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에 대한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세 가지의 핵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이병식, 채재은, 2006).
  - 대학 자체 및 외부 질 보장 체제를 갖추
  - 질 보장과 관련된 활동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해당 지역 또는 국제적으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 강화.

## 나.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

- UNESCO/OECD 지침과 더불어 Bologna process Bergen 회의(2005. 5. 9-20)에서 EU국가 교육부장관들이 채택한 ENQA 보고서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Standards and Guidelines for Quality Assurance in the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 2005)”은 고등교육 품질 보증에 대한 유럽 권역의 견해가 집약된 규범임(이영호, 2008).
- ENQA 보고서는 “European Network for Quality Assurance in Higher Education”에 의해 작성된 것임(ENQA, 2010).
  - ENQA는 2000년 유럽 지역의 질 보장을 위해 국가 간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되었던 것을 2004년에 기관으로 전환하였음.
  - 이후 볼로냐 프로세스에 의해 ENQA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EHEA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유럽고등교육 권역 고등교육 질 보증 지침”에는 대학 자체평가의 정책 수립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학위수여, 학생평가, 교수진의 질, 학습지원과 학생 지원체제, 학습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주요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어떤 고등교육기관을 막론하고 공식화 되어 있는 학위수여 규정 및 관리체제가 타당하며, 객관적인지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여 공개해야 함.

- 학생들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함.
- 유능하고 자격이 있는 교수진이 확보되어 있으며, 교수의 질 제고를 위한 적절한 교수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함.
- 학생이 각각의 프로그램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학습자원을 적당하고 적절하게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해야 함.
- 학습 프로그램의 질은 우수하며, 학습 활동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수집이 되고 있는지, 그 정보가 생산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야 함.
- 고등교육기관들이 저마다 제공하는 학습 프로그램 및 학위수여 현황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집계·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함.
- 이 지침에서는 외부 제3자 평가기구의 품질 보증 활동의 효율성, 활동 범위, 자원, 사명, 독립성, 외적 질 보장의 준거와 과정, 절차적 책무성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외부 품질 보증 평가활동의 효율성을 입증해야 함.
  - 당해 국가의 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야 하고, 그 법이 정하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ENQA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함.
  - 공식화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품질 보증 평가 활동을 추진해야 함.
  - 외부 품질 보증 평가에 필요한 인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들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외부 질 보장 과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함.
  - 외부 품질 보증 평가활동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여 공표해야 함.
  - 피 평가 고등교육 기관, 정부, 그리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로부터 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독립적이어야 함.

- 품질 보증을 위한 과정과 절차 그리고 준거 기준은 사전에 만들어져야 하고 공표되어야 함.
-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함.
- 외부 제3자 평가기구에 대한 지침에서는 ①품질 보증을 위한 평가방법 및 절차적 사항으로 자체평가와 연계성이 있는 외부 제3자 품질 보증 평가 주요 항목의 선정, ②전문가 집단에 의한 외부 평가와 현지 방문에 의한 확인, ③외부 제3자 평가위원의 검토의견·권고사항·기타 공식적 견해를 포함하는 보고서 출판, ④동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관련 후속 조치 등을 강조하고 있음.

## V.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 협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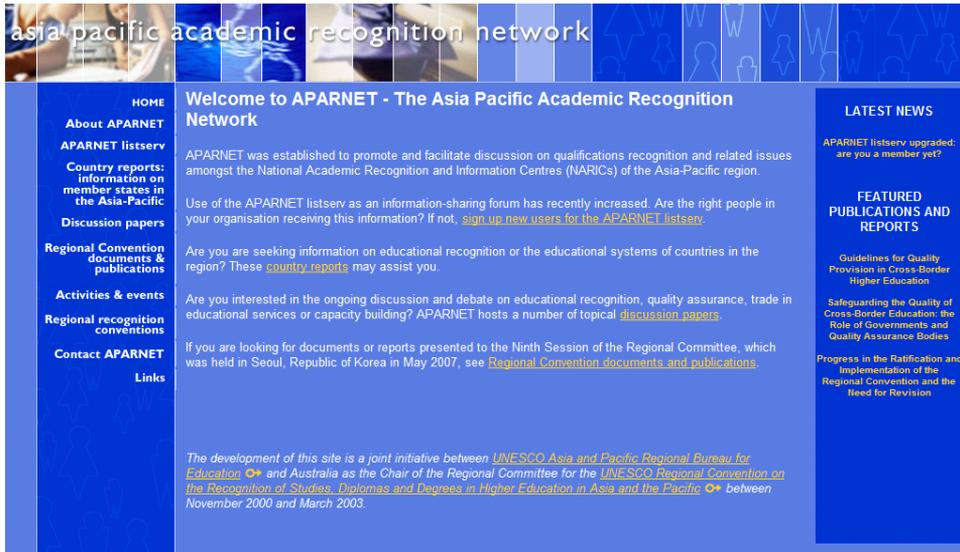
### 1.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습결과 및 학위 인정에 관한 지역협약 (1983, 방콕)

#### 가. 개요

- UNESCO에서 주도하여 고등교육 학위 등을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고자 지역 협약의 일환으로 1983년 방콕에서 합의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약임.
- 이 협약서에 인정의 의미는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를 인정하고 국내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소지자가 향유하는 권리를 상응한 외국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소지자에게 부여함“을 의미함. 기본적으로 수학,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및 학위를 인정하는 것을 협약함.
- 2012년 현재 21개 회원국이 비준(우리나라는 ‘89년 비준) : 중국, 호주, 스리랑카, 터기, 북한, 대한민국, 네팔, 몰디브, 러시아연방, 몽골,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티칸시국,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인도,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조인시기 順)
- 지역 협약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The Asia Pacific Recognition Network(APARNET)을 구축하였으며, listlerv를 통한 정보 공유와 웹사이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89년에 인준하였지만, 이러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보 교환체제를 갖추지는 않았으며, UNESCO에서 운영하는 Portal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음.

## 나. APARNET

- The Asia Pacific Academic Recognition Network (APARNET)은 1983년 체결된 UNESCO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자격인정 지역협약(UNESCO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의 학력인정 및 정보센터(National Academic Recognition & Information Centre: NARIC)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각 국의 정보센터 간의 정보 교환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축됨.
- APARNET은 정보교환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설된 웹사이트([www.aparnet.org](http://www.aparnet.org))와 이메일을 활용하는 listserv로 구성되어 있음.
- 2000년 11월 방콕에서 열린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시스템과 자격에 대한 정보 교류가 용이하도록 각 지역 국가정보센터의 네트워크 구축 제안을 바탕으로 설립됨.
  - 웹사이트에는 협약과 관련된 활동, 각 활동에서 생성된 자료, UNESCO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협약 관련 전 세계의 활동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listserv(이메일 기반 정보공유포럼)는 관련자 간의 실시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들이 다른 모든 회원들과 이메일 메시지를 교환하고 회원국 간 신속한 질의응답을 가능하게 하며, 질의응답 내용을 APARNET에 저장함.



(그림 12) APARNET 홈 페이지(www.aparnet.org)

## 2. 아태지역 협약 개정을 위한 활동

### 가. 개정의 배경과 전제

- 아태지역 협약의 개정에 관한 제안은 1983년 이후에 지난 25년간 고등교육에서 목격되는 많은 변화가 배경이 되었음.
  - 공교육 및 사교육의 급격한 성장
  - 국경간의 이동 증가
  - 통신 기술의 발달
  - 고등교육의 거대화
  - 평생교육 및 학습의 등장
  - 원격교육에 의한 자격 취득

- 국가별 자격체제 개발
- 학습 결과 측정 도구의 개발
- 국가별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체제 구축 필요
- 새로 개정되는 협약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음.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요구 반영
  - 신규 협약이 아니라 개정(인준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
  - 고등교육에서의 최근 동향(국경 간의 교육, 혼합 학습 등) 반영
  - 향후 이 지역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역동적 도구 제작

## 나. 개정 추진 일정별 주요 내용

RC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은 APARNET이 아니라, RC에 따른 Regional Committee의 2년 주기 세션 (XXth Session of the Regional Committee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APARNET X회 모임이라는 것은 Regional Committee의 XX차 세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 1983년도에 체결된 아태지역의 협약에 대한 개정 논의는 Regional Committee 제 8차 모임인 2005년 Kunming에서 제안되었으며, 개정을 담당할 작업팀이 구성되었음.
- 2008년 서울에서 열린 9회 모임에서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07~8년도에 초안이 작성되었음.
- 2009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10회 모임에서 Working Group Report가 제출되었고, Working Group에게 수정된 지역 협약을 마무리할 것을 권고, 수정된 지역 협약을 UNESCO 본부에 제출하였음.

- 2010~11 실무팀은 수정된 지역 협약을 지속적으로 수정하였음. 2011년 수정을 마무리하고 각국에 송부함.
- 2011 11월 도쿄에서 아시아 태평양 협약이 채용됨. 7개국과 Holy See가 승인함.

### 3. 협약 채택을 위한 동경회의(2011)

- 2011년 11월 25~26일에 동경에서 개최된 회의는 UNESCO의 주도 하에 이전의 회의에서 논의 및 합의된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자격 인정 지역 협약 개정안<sup>1)</sup>”을 채택하려는 목적이었음.
- 협약에 국가를 대표하여 서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대표가 참석하여 2일간의 회의 끝에 서명의 자격이 있는 11개 국가 중에서 한국, 중국,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교황청, 라오스, 티모르, 터키 등 9개국이 협약에 서명하고, 일본과 호주 등 2개국은 국내 절차 상의 문제로 추후 서명하기로 하였음.
- 개정된 협약은 1983년도의 원안에 비해 많은 부분이 바뀌었지만, 전 세계의 다른 지역 협약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Lisbon 협약에 맞추었음.
- 협약 개정안은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 등 자격에 대해 차별 없이 인정평가의 기회를 보장하되, 실질적인 차이(substantial difference)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해야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원안을 거의 대부분 수정하였음.
- 개정된 협약의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 (Bureau+Expert Meeting)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

---

1) 개정안은 <부록 1> 참조

〈표 24〉 아태지역 협약 개정안 주요 내용

	제목	주요내용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협약의 의의 및 목적</li> </ul>
제1장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한 있는 인정당국’, ‘고등교육 자격’ 등 주요 용어 정의</li> </ul>
제2장	권한당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국은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 인정에 대한 권한을 지닌 기구(권한당국)가 본 협약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li> </ul>
제3장	자격평가에 관한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 소지자는 공정성 및 차별 원칙아래 인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음</li> </ul>
제4장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자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국은 타 당사국과 고등교육 접근의 일반요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타 당사국이 수여한 자격을 인정해야 함</li> </ul>
제5장	부분 이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국의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타 당사국에서 이수한 부분 학습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이러한 부분 이수를 인정해야 함</li> </ul>
제6장	고등교육 자격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국은 타 당사국과 상응되는 자격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타 당사국이 수여한 자격을 인정해야 함</li> </ul>
제7장	난민, 유민 및 피난 상황에 처한 자들이 보유한 자격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국은 난민 등이 취득자격을 증빙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인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절차를 개발해야 함</li> </ul>
제8장	평가·인증 및 인정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국은 자국의 고등교육 기관과 질 보증 체제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국가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함</li> </ul>
제9장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이행을 총괄하기 위한 ‘아태지역 고등교육관련 자격인정협약 위원회’ 운영</li> </ul>
제10장	종결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의 효력발생’ 및 ‘1983년 협약과의 관계’ 등</li> </ul>

## 4. 2012년 5월 서울 회의

- 2011년 11월에 동경에서 합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5월 23~4일, 서울에서 “UNESCO 아태지역 고등교육 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가 전문가 회의 (National Expert Meeting)”가 개최됨.
- 아태지역의 19개국이 참석하여 23일에 각국의 상황에 대해 국가별 보고가 있었고, 2일째에는 NIC 설립과 관련하여 유럽의 ENIC 소개와 호주, 중국, 필리핀, 한국의 현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음.
- UNESCO에서 이 회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수정된 아태지역 협약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역 협약의 인준과 적용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국가 간의 논의 촉진
  - 지역 협약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한 합의
  - NIC 구축과 아태지역 내의 질 보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논의
- 우리나라가 이 회의를 개최한 목적은 다음과 같음.
  - UNESCO·아태국가 공동으로 협약 개정 이후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아태지역의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 추진기반 마련.
  - 국제사회의 주요 화두인 고등교육 학위 인정 논의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 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 대교협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 국가정보센터 기능 정립방안 도출함으로써 대교협의 국내외 학위에 대한 질 관리 역할 강화.
  - UNESCO 6개 지역협약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협약의 글로벌 협약(Global Convention)으로의 발전을 위한 논의 확산.
- 아태지역 국가별 현황 보고는 UNESCO에서 제시한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음. 각국의 발표자료는 APARNET 웹사이트

(www.aparnet.org/country\_reports.htm#2012)에 게시되어 있음.

- How does your country recognize foreign qualifications?
  - Do you hav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the assessment and recognition of foreign qualifications?
  - What are the issues and challenges with regards to recognition of foreign qualifications?
  - What progress has been made in ratifying the revised 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 What is your government's view on the feasibility of a Global Convention?
- 각국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음.

〈표 25〉 국가별 발표 내용 요약

국가	외국 자격 인정	인정 기준과 절차	인정 관련 쟁점
호주	- National Office of Overseas Skills Recognition (AEI-NOOSR)dl 설립되어 있음. Lisbon 협약에서 요구되는 NIC의 역할을 담당함. 호주에서 외국 학위 인증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교육 체제에 관한 정보와 조인 제공. 호주의 교육체제에 관한 정보 제공	- 자격 틀과 비교하여 결정 내림, 3단계에 걸쳐 결정을 내림. 국가 수준: 국가의 규정, 질 보장, 회근 동향, 기관 수준: 기관의 법적 상태, 국가에서의 인정, 자격: 자격으로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 출발점 수준, 학문 수준 등 - CEP Online: 인정 도구, 120개국의 교육 체제에 대한 연구와 분석 데이터베이스, 질 높고, 일관성 있고, 시의적절한 결정을 지원하는 도구, 8천명 이상의 사용자, - 호주 Qualifications Framework에 비추어 해외 자격의 교육적 호환성, 교육체제에 관한 정보 제공, 인정된 기관 목록 등 제공.	- 각국의 상이한 교육체제, 교육실제와 기관, 공식 정보의 부재에 따른 인정의 어려움 - 질 높은 정보에 대한 접근, 투명한 정책과 절차, 학습 결과에 대한 초점이 중요 - 인정 도구, 문제 해결, 인정 장애물 제거에 국제적 협력 필요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과 상호 인정 원칙</li> <li>-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법령과 정책 제정, 기관과 조직 정비</li> <li>- 해외 학위 검정을 위한 CSCSE와 국내 학위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CDGDC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의 법적 지위,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개별 자격의 수준, 입학 기준, 프로그램 요구 사항, 학습 결과 등을 통해 판단함.</li> <li>- CSCSE에 의해서 이루어짐. UNESCO Portal의 중국 Focal Point임. 중국인의 외국 대학에서의 수학과 외국인의 중국 유학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 체제와 학위 수여 정책의 다양성</li> <li>- 국경을 넘어선 교육 제공의 급격한 변화와 다양한 형태</li> <li>- 해외 기관으로부터의 시의적절한 응답</li> <li>- 허위 문서, 졸업장 공장, 해커 공격 등</li> </ul>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년에 Committee of Evaluating Degrees and Diplomas(CEDD) 설립</li> <li>- 해외 학위 인정 기준과 절차 등을 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에 교육 배경과 학위증, 성적증명서, 학생증, 여권과 비자, 학위논문 등을 근거로 평가함.</li> <li>- 신청 서류의 정확성과 적절성 평가후 CEDD회의에서 확정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간의 교육 체제의 차이에 따른 자격 평가의 어려움.</li> <li>- 고등교육 기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정보 부재</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에 의해 규정됨</li> <li>- DGHE의 Director of Academic &amp; Student Affairs에서 담당함.</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GHE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활용함.</li> <li>- 신청서와 함께 자격증을 제시하면 학위 수여 기관, 학위증의 진위 확인 후 인정.</li> <li>- 2010년부터 온라인 시스템 활용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문영역별 학위의 등가성</li> <li>- 가짜 학위 식별</li> <li>- 학위 수여기관에 대한 정보 부재.</li> <li>- 원격교육 평가의 어려움</li> </ul>
라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Higher Education (DHE)에서 담당하며, 별도의 기관은 없음.</li> <li>- 국내외의 학위 수여기관에 대한 목록 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와 함께 학위증 원본, 학위 수여 지역의 거주 입증 서류, 이력서 등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학위 인증에 대한 법령 정비.</li> <li>- 다양한 서류에 비해 동일한 기준 사용</li> <li>- 학위 서류에 기재된 정보로 판단하기는 미흡함.</li> </ul>

물 디 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에 Maldives Accreditation Board (MAB)을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Maldives Qualifications Authority (MQA)로 명칭 변경함.</li> <li>- MQA에서 고등교육 학위 인정에 관한 업무 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 기준은 기관이 해당 국가에서 인정된 기관인지, 전공 프로그램이 Maldives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MNQF)에서 설정한 표준과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함.</li> <li>- MNQF는 2001년에 처음 설정되어 2009년에 개정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음. 역량기반의 10개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과 수학기간의 융통성</li> <li>- 온라인/원격 교과목의 책무성</li> <li>- 자격의 벤치마킹.</li> </ul>
몽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국의 협정에 의한 해외 학위의 인정 원칙</li> <li>-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of Mongolia에서 해외 학위 인정 업무 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위 인정을 위한 공식적인 기준은 없음.</li> <li>- 성적증명서, 수학기간, 학력, 수여기관의 자국 내에서의 인정 여부 등을 근거로 평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체제, 수준, 대학원 등에 대한 정보 미흡</li> <li>- 온라인 과정을 통해 획득한 학위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li> <li>- 제출된 서류의 진위 판단의 어려움</li> </ul>
네 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urriculum Development Centre 와 Higher Secondary Education Board for School Education에서 담당함.</li> <li>- 해외 학위 수여 기관에 대한 목록을 제공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DC에 신청서 학위증, 성적증명서, 학위수여기관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함.</li> <li>- CDC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외 학위 수여 기관의 목록을 참조함.</li> <li>-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 판정 후 관련 대학의 장에게 서류를 보내서 상세한 검증을 거침.</li> <li>- 학위증, 성적증명서, 학위 수여기관, 기타 자료를 제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우 부재</li> <li>- 복잡한 대학 유형과 교육 제도</li> <li>- 해외 학위에서의 지식 판단 문제</li> <li>- 호혜성</li> <li>- 학점 교류 문제</li> <li>- 데이터베이스</li> </ul>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CHED)에서 해외 학위에 관한 업무 담당함.</li> <li>- 승인된 대학 목록을 작성하여 갱신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적증명서, 학위수여기관의 추천서, 학위증 등을 바탕으로 평가함</li> <li>- APARNET과 긴밀하게 협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PARNET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li> <li>- NIC의 부재</li> <li>- 국가별 고등교육 체제와 기관에 대한 지침서 부재</li> <li>- 법적 제약</li> </ul>
스리랑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AA Council of UGC에서 담당함.</li> <li>- Sri Lankan Qualification Framework (SLQF)이 현재 개발 중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두 가지 목록에 해당 기관이 있을 경우 학위 인정: Commonwealth Universities Year Book, World Universities Director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의 증가</li> <li>- 자격 내용의 깊이에 대한 평가 어려움.</li> <li>- 온라인 과정 평가의 어려움.</li> </ul>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Council of Higher Education에서 학사와 석사를 담당하고, Inter-University Council에서 박사학위를 담당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위증, 성적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으로 판단함.</li> <li>- CoHE에서 제출된 학위의 등가성에 대해 판단함.</li> <li>- 해당 국가에서의 인정여부, 서류의 진위, 프로그램의 등가성, 수학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전공이 많음.</li> <li>- 해외 국가의 다양한 교육 체제</li> <li>- 학위 프로그램의 다양성.</li> <li>- 분교의 평가</li> </ul>
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ji 질관리 체제가 현재 개발 중에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 확인, 학점, 자격 유형 등을 확인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제가 아니기 때문에 등가성 판단이 힘들.</li> </ul>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w Zealand Qualification Authority에 의해 질 관리 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학위인정에 대한 업무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w Zealand 내의 대학 기관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li> <li>- 1989년에 QRS 법이 제정됨.</li> <li>- 학위증, 성적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음</li> </ul>
방글라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학과 법학 분야는 해당 영역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그 외의 학위는 대학협의회에서 구성한 Committe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 알려진 대학에서 획득한 학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인정함.</li> <li>- 아시아와 호주의 잘 알려진 대학에서 획득한 학위에 대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학점의 인정이 어려움.</li> <li>- UNESCO 회원국 간의 상호협약의 부재</li> </ul>

시	of Equivalence에서 판단함.	서도 자동적으로 인정함.	- 해외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한. - 학위 인증 도구의 부재
베트남	- MOET의 General Department for Education Testing and Accreditation(GDETA)에서 해외 학위 인정에 대한 업무 담당함.	- 성적증명서, 학위증, 여권 등의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함.	- 자국 내에 인정받지 못한 프로그램과 기관이 많음. - 일부 국가에는 자격 관련 기관이 없음. - 학점과 질 보장체제의 상이함.

## 5. 난징 회의(2012년 10월)

- 이 회의는 개정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등교육 학위인정 협약의 실행을 위한 툴킷(toolkit) 초안에 대한 실무그룹 협의회(Working group meeting on the draft toolkit for implementing the revised 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와 고등교육 학위인정에 대한 범세계적 협약 실행가능성 연구에 대한 지역전문가 협의회 (Regional expert meeting on the feasibility study on a glob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등이 개최되었음.
-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중국 난징에서는 고등교육 학위인정 협약과 관련한 두 개의 협의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협의회는 개정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등교육 학위인정 협약을 원활한 확산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툴킷의 초안에 대한 검토회의였으며, 두 번째 협의회는 지역간 협약을 뛰어넘는 전세계 단위의 고등교육

학위인정협약의 가능성에 대한 각 지역별 실행가능성 연구에 대한 보고 및 향후 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회였음.

## 가. 툃킷 초안에 대한 실무그룹 협의회

### 1) 배경 및 목적

- 2011년 11월 일본 동경에서 비준한 협약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에서는 개정된 협약의 실행과 추가적인 비준을 위한 일련의 모임을 개최하였는데 2012년 5월 서울에서 열린 NIC관련 세미나에서 참가국들은 개정된 협약의 지원을 위한 툃킷의 개발과 기존의 APARNET의 재활성화에 동의하였음.
- 개정협약의 지원을 위한 툃킷의 개발을 위해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의 주관하에 실무진을 구성하여 개정된 협약에 대한 설명, 외국 학위인정 사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개정된 협약의 비준확대 지지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툃킷을 개발하였음. 이에 따라 본 협의회는 목적은 개발된 툃킷 초안과 이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실무진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었음.

### 2) 협의회는 진행

- 개발된 툃킷의 초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sup>2)</sup>이 있고, 이에 대한 외부 컨설팅 결과가 제시되었음. 컨설팅 과정을 통해 수집된 툃킷 초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각 부분들이 이후 협의회는 주요 토의대상이 되었음.
- 툃킷 초안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는데 첫째는 툃킷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실제 툃킷의 적용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나 문제 상황에 대한 것임.

---

2) 툃킷 초안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2>을 참조

〈표 26〉 툴킷 초안에 대한 토의 주제와 논의내용

성격	토의주제	논의 내용
용어의 정의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stat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본 협약에 포함된 Diploma supplement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학위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서를 의미함</li> <li>- 최초 제안은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statement”였으나, “UNESCO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statement”로 수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li> </ul>
용어의 정의 및 실행 과정	non-traditional mod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통적인 학점취득을 통해 개별국가의 고등교육의 학위 취득자에 대한 인정부분에 대해서 비전통적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toolkit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여부</li> <li>- 예를 들어, 직장내 교육, 온라인 과정, 교사들의 재교육 과정 등</li> <li>- 각국마다 비전통적인 방법을 통한 학위취득의 경우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음.</li> </ul>
용어의 정의	assessment procedures-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competent author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위인정을 위한 사정절차와 관련하여 외국 학위에 대해서 각국의 인정기관이 사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li> <li>- 각국의 인정기관의 역할과 책임 부분에서 외국 학위에 대한 사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li> </ul>
실행 과정	trans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국가의 언어로 표기된 학위인정 관련 문서의 경우 이를 위해서 지역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는 영어로 된 문서를 발급하는 것을 제안</li> <li>- 그러나 각국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완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실행과정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li> </ul>
실행 과정	recognition of partial stud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전하게 학위과정을 마치지 않았으나 해당국가에서 부분적으로 학위과정을 통해 학점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인정을 툴킷을 통해서 설명해야 하는가의 여부</li> </ul>
실행 과정	verification of the authenticity of docu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위 인정과정에 필요한 관련 문서의 진위여부의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의 여부</li> <li>- 원본자체에 대한 진위여부의 판가름과 더불어서 이의 교환 및 전송에 대해서 복사본의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li> </ul>
용어의 정의	substantial differe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간 학위인정에 있어서의 전제조건이자 단서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substantial difference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함</li> <li>- 예를 들어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개별국가간의 차이가 substantial difference를 야기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음.</li> </ul>

- 중국의 학술교류 서비스센터(Chinese Service Center for Scholarly Exchange)에서 그간의 사업진행에 있어서 야기되었던 외국의 학위관련 인정 및 사정과 관련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음.

- 비전통적 방법에 의한 학위취득:

- 한국의 방송통신대학교와 같이 온라인으로 이수한 학위의 취득 인정여부
- 호주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중 학생은 중국으로 이주하였고, 전체 과정의 30%는 중국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함. 전통적인 대학원 교육과 비전통적인 교육이 혼합된 결과로서의 학위에 대한 인정여부

- 학위취득 소요 기간

- 호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박사학위 과정 3년 동안 학생은 호주에 3번 방문하였으며, 체류기간은 총 33일에 불과함.
- 호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분야의 전공에 대해서 3개월간의 추가 학습기간을 통해서 석사학위를 취득함.
- 모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학사학위 과정 학점의 60%를 인정받아 1년의 추가 학습을 통해서 두 번째 학사학위를 호주에서 수여받음

- 학위취득 소요기간과 제 3기관의 인정

- 태국에서 한 달 기간의 집중이수과정에 3년 동안 참가한 후 미국대학이 수여하는 석사학위를 취득함
-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호주대학의 분교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음. 그러나 동일한 대학이 싱가포르에 설치한 분교는 학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음.

- 취득 학위에 대한 증명여부

- 외국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발급된 러시아 대학의 증명문서에는 학사과정의 공식 성적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3) 협의회 결과

- 개정된 협약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더불어 학위인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성된 툃킷 초안에 대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협의회에서 제시된 문제들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조사와 의견조율이 필요함을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였음.
- 유네스코 방콕사무소의 주관하에 툃킷 초안의 작성을 맡았던 전문가 그룹이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한 툃킷의 수정본을 작성하여 이를 다시 실무 그룹 구성원들에게 회람하여 최종적인 툃킷을 마련하는 것으로 논의가 마무리 되었음.

## 나. 고등교육 학위인정에 대한 글로벌 협약에 대한 실행가능성 연구에 대한 지역전문가 회의

### 1) 배경 및 목적

- UNESCO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교육학위 인정에 대한 활동은 현재 5개의 지역협약과 1개의 지역 간 협약을 통해 구체화 되었음.
- 2011년 11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국제협의회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학생들의 국제적인 이동과 지역을 넘어선 학습활동의 전개로 말미암아 고등교육학위 인정에 관련한 협약의 새로운 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추동력이 형성됨.
- 이러한 합의에 따라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고등교육학위 인정협약, 즉 글

로별 협약이 실제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음.

- 2012년 5월 서울에서 UNESCO의 5개 지역 협약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처음으로 만나서 지역간 학생과 노동력의 이동양상에 대한 분석과 각 지역에서 글로벌 협약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합하는 연구를 진행할 전문가 그룹의 구성에 동의하였음.
-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지역의 정책입안자, 연구자, 실천가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협약 실행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본 회의의 목적은 수행된 글로벌 협약 실행가능성에 대한 자료들에 대한 지역별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연구의 내용과 구조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었음.

## 2) 협의회의 진행

- UNESCO의 컨설턴트인 Stamenka Uvalić이 실행가능성 연구의 배경과 진행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공하였음.
  - 고등교육학위인정을 위한 현재의 5개 지역협약과 1개의 지역간 협약의 역사적 발전상과 현재 협약들의 공통적인 내용 소개
  - 글로벌 협약에 대한 수요의 증가, 학생이동의 패턴 변화, 고등교육 제공자와 수요자의 다변화, 원격교육의 활성화, 학위의 질보증과 관련된 국제적 이슈등 글로벌 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제공
  - 글로벌 협약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연구의 진행은 2012년 서울 회의에서 제기된 이후에, 각 지역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공통된 구조를 지닌 연구를 수행하여 이번 회의에서 그 결과를 논의한 후, 2013년 2월까지 그 최종결과를 UNESCO 본부에 제출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시간적 흐름 제시

- Molly N. N. Lee는 지역간 학생과 노동이동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음.
  - 자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한 학생의 수가 2004년 2,455,250명에서 2009년 3,369,242명으로 증가하였음.
  - 이들 학생이 이동대상으로 삼는 국가는 미주와 서유럽 지역의 국가가 많았으며,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이들 지역으로의 학생이동이 편중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노동인구의 해외이주와 관련한 자료에서는 중동지역의 국가(Qatar, UAE, Kuwait 등)는 전체인구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70%~8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있었으며, 주로 빈국에서 부국으로의 노동인구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각 지역별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수행한 글로벌 협약의 실행가능성 연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관련된 토의가 동시에 진행되었음. 제시된 지역별 실행가능성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요약하면 <표 27>과 같음.

<표 27> 지역별 글로벌 협약의 실행가능성 연구 내용과 결과

지역	참여 국가수	참여 인원수	연구결과
아프리카	17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9명 가운데 39명이 글로벌 협약의 개발에 호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음.</li> <li>• 답변에 따라서 제안된 글로벌 협약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함</li> <li>•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글로벌 협약으로 인해 인재의 외부유출(brain drain)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li> <li>• 지역내 국가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글로벌 협약에 대한 비준과 실행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li> </ul>

아랍	(최소)8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2명 가운데 17명은 글로벌 협약의 무조건적인 수용, 12명은 조건부 수용, 3명은 거부입장을 나타냄. 즉, 다수가 글로벌 협약의 개발과 확산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함.</li> <li>• 글로벌 협약의 장애요소로는 고등교육체제의 상이성, 학위인정 체제와 기준의 상이성, 중등교육의 상이성, 고등교육 학위와 관련된 국가단위 정보체제의 미흡, 언어적 장벽 등이 제시되었음.</li> </ul>
아시아-태평양	17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명 가운데 15명은 무조건적 수용, 9명은 조건부 수용입장을 밝혀 응답자 다수가 글로벌 협약의 개발과 확산에 동의함.</li> <li>• 국가정보센터와 국가자격기준체계의 마련, 학위정보의 교환을 위한 공식적인 채널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외에 국가별 다양한 고등교육 관련 상황에 따른 이슈들이 제기되었음.</li> </ul>
유럽-북미	31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개국의 응답 가운데 6개국은 무조건 수용, 21개국은 조건부 수용, 4개국은 거부입장을 밝힘.</li> <li>• 글로벌 협약의 무리한 추진은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유럽지역의 학위인증체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li> <li>• 대안으로서 글로벌 협약을 실행체계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체계는 지역협약을 통해 제공하고 글로벌 협약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문 형태로서 개발하자는 의견 제시.</li> </ul>
라틴아메리카	(최소)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응답자들이 무조건적 혹은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힘</li> <li>• 글로벌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움직임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지역협약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li> </ul>

- 각 지역에서 실시된 글로벌 협약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탐색연구의 결과는 대체적으로 글로벌 협약의 진행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정치적, 문화적, 고등교육 분야의 상이성으로 인한 우려와 이슈들이 함께 제기되었음.
- 글로벌 협약과 관련하여 제시된 추가적인 논의의 주제는 크게 학문적, 윤리적, 정치적, 실천적 영역으로 압축될 수 있었음.

- 학문적 영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은 개별 국가들의 고등교육체제, 학위의 질 보증 매커니즘, 학위인정의 프레임워크, 기관의 자율성, 교육의 방식, 고등교육기관의 유형에 있어서 나타나는 상이함을 어떻게 규정하고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임.
- 윤리적 영역에서의 문제는 빈국에서 부국으로의 학생 및 노동인구 이동으로 인한 인재 유출현상, 상대적으로 약소국의 위치에 있는 국가에 대한 고려, 고등교육 분야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개별 국가의 주권인정, 문화적, 언어적 차이에 대한 문제임.
- 정치적 영역에서의 문제들은 고등교육 학위인정에 대한 기존의 지역협약 또는 지역간 협약과 글로벌 협약간의 관계 설정, 고등교육 분야 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간 국가간 협의체계(예를 들면 EU, APEC, FTA 등)와의 연계성, 협약의 실행을 위한 자원의 분배와 공유의 문제임.
- 실천적 문제는 글로벌 협약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각종 활동의 재정적 지원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어떠한 전문인력들을 포함할 것인가,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임.

### 3) 협의회의 결과

- 지역별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85%~93%의 응답자가 글로벌 협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더불어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하여 향후 UNESCO에서는 글로벌 협약이 가질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여 실행가능성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음.
- 제출된 보고서는 2013년의 유네스코 이사회 및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될 것임

## VI.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 협약 개정안

### 비준에 따른 후속과제

-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 협약의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비준하였으며, 정부는 다음의 후속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 학위 인정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정보센터의 구축이 시급하게 요구됨.
-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인증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국내 학위뿐만 아니라 외국 학위의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전 세계적으로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따른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및 국가 자격제도간의 연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1. 국가정보센터의 구축

- 2011년 UNESCO의 주관으로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자격인정 지역협약 개정안」이 비준되었음. 이 회의의 주된 내용 중의 하나는 아태지역 내 학위의 통용성 확보를 목적으로 학위 인정 평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내외 고등교육에 대한 공인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on Center, NIC)를 구축하자는 내용이었음.
- 외국취득 학위인정에 관한 문제와 인증평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고등교육 제도에 관한 투명하고도 공인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도 국가정보센터가 반드시 필요함.

- 고등교육법 제27조에도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 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음.
- 현재 National Information Center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가를 대신하여 학위인정 관련 문제를 전담
  - 국내외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합법적이고 공인된 정보를 총괄 제공
  - 외국 학위 및 자격 등에 대한 인정심사, 인정관련 지침 및 자문
  - 대학의 유네스코 학위보충자료(UNESCO Diploma Supplement) 활용 촉진
-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가정보센터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 외국 학위인정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합법적이고 공인된 정보를 총괄하여 제공
  - 외국 학위에 대한 인정심사 및 자문 수행 : 분쟁이 있을 경우, 공인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기관의 신청에 의거하여 외국 학위에 대한 인정심사 및 자문 수행
- 우리나라 대학에 관한 정보는 이미 대학정보공시제를 바탕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공시센터에서 ‘대학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 대학 알리미 사이트는 현재 국문과 더불어 영어와 중국어로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대학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구축되어 있으므로 해외 대학에 대한 정보를 외국의 정보 제공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국가정보

센터의 구축을 고려해야 보아야 함.

- 국가정보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 부처 간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2. 국제적 통용성을 갖춘 고등교육 평가인증체제 구축방안 탐색

-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관의 평가인증체제로는 대학에 의한 자체평가 와 대학기관평가가 있음.
- 대학기관평가는 이전의 대학종합평가와는 달리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를 바탕으로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적인 평가인증체제와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대학기관 평가는 2011년부터 실시되어 현재 60개 대학만 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이제 시작 단계에 있음.
- 현재까지는 대학기관평가에서의 인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 인증의 권위 및 신뢰성부터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평가인증에 대한 대학의 참여율을 높이고 인증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여야 함.
- 더불어 국내 평가 기관에 의한 대학의 질에 대한 인증이지만, 이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인증이 되도록 정부 와 평가기관, 그리고 인증받은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기관평가의 국제적 통용성을 갖추기 위한 세부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3. 외국 학위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탐색

- 우리나라는 대학에 대한 설립 인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진입단계에서 부터 품질관리를 실시 해 왔으며, 2007년부터는 평가인증 기관에 대한 정부인정제 및 대학의 주요정보들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하였고, 2011년부터는 대학기관평가를 실시하는 등 국내 고등교육학위에 대한 질 관리를 해 왔음.
- 국내 고등교육에 대한 질 관리는 철저한 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학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폭 넓게 인정하고 있음.
- 현재까지 학위인정의 상호 등가성 원칙에 기반 한 국내 학위의 질 보장과 외국 학위인정을 포괄하는 체계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은 바,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학위 및 자격인정에 관한 국가차원의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함.
- 국가정보센터를 통해 국내 학위와 등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지침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학위 인정에 대한 권고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외국 학위 인정 관련 부실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원통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등과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4. 고등교육 이외 분야와의 연계방안 탐색

-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 협약의 개정에는 지난 25년간 교육 이외의 영역, 특히 평생교육 분야의 급성장이 원인이기도 함.
- The 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EQF)는 2008년 유럽 지역 기관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1수준)에서 고

급(8수준)까지 구분되어 있음 (European Commission, 2012).

- EQF는 학교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모든 교육 유형, 자격제도에 적용될 수 있는 체제임.
- EQF의 적용에 의해 지금까지 수학기간과 졸업 기관 등을 중심으로 자격을 인증하던 방식에서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을 인증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특히 평생교육과 기타 국가에서 수여하는 다양한 자격 제도에 대한 검증 및 인증도 이 체제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가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s를 만들고 있으며, 다수의 나라가 이미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자격체제를 구축하여 기존의 학교교육 중심의 학위 인정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평생교육과 비공식적 교육까지 포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강병운 (2005).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향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23(2), 421-446.
- 교육과학기술부 (2012a).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2b). 2012 대학정보공시-지침서 [대학 및 대학원용]-. *교육과학기술부*.
- 김환식 (2006). 고등교육정책 현황과 과제. *직업과 인력개발*, 겨울, 4-12.
- 대학정보공시센터 (2012).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http://www.academyinfo.go.kr) (2012년 12월 1일 방문).
- 박인우 (2003). 대학정보화 정책의 비판적 검토를 통한 교수-학습활동의 혁신방향 모색. *한국교육학연구*, 9(1), 303-326.
- 성태제 (2009). 대학 자체평가 모형 개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엄상현, 변기용 (2012).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교육문제연구*, 42, 123-155.
- 오세희 (2011). 해외 학위 검정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RR2011-04.
- 이병식, 체재은 (2006). UNESCO/OECD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교육행정학회지*, 24(1), 267-288.
- 이영학 (2008). 대학정보공시제의 효율화 방안. *대학교육*, 178호.
- 정기오 (2005). 대학국제화의 현황과 전망, 대책. OECD 주제검토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교육개발원*, 서울.
- 최정윤, 김미란 (2009).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및 지수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

원, 서울.

하연섭, 문우식 (2012). 2단계 Study in Korea 추진방안. 한국연구재단 2012-03.

Duderstadt, J. (2000). A University for the 21st Centur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European Commission (2012). The 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 Retrieved 2012. 11. 30, from [http://ec.europa.eu/education/lifelong-learning-policy/eqf\\_en.htm](http://ec.europa.eu/education/lifelong-learning-policy/eqf_en.htm).

Knight, J. (2008). Higher Education in Turmoil: The Changing World of Internationalization. Sense Publishers

Knight, J. (2003). GATS, Trade and Higher Education. Perspective 2003: Where are We?. Observatory Report.

Luijten-Lub, A. (2007). Choices in Internationalization: How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respond to internationalization, Europeanisation, and globalization. CHEPS. University of Twente.

Vincent-Lancrin Stephan. (2009).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Trends and Perspectives. in OECD, Higher Education to 2030. Vol. 2: Globalisation. 63-88. Paris: OECD.



# 부 록

<부록 1> 아태지역 협약 수정본 .....	95
<부록 2> Toolkit for the Recognition of Foreign Qualifications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학위 인정 지역협약에 관한 툴킷) ....	148
<부록 3> 2012년 5월 서울 회의 한국 보고서 .....	163



## <부록 1> 아태지역 협약 수정본

###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자격 인정에 관한 지역협약

### 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 개요

#### 서언

유네스코의 후원 아래, 고등교육 수학 및 자격 인정에 관한 6개의 협약이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사이에 채택되었다. 고등교육 수학 및 학위의 상호인정을 규정하는 6개 규범문서가 채택된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지역 고등교육 수학 및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1975년 6월)이다. 이후 10년에 걸쳐 고등교육 학력 및 학위에 관한 5개의 유사 지역협약이 채택되면서, 전 세계 모든 지역을 아우르게 되었다. 지중해 인접 아랍 및 유럽국가(지중해 협약)(1976), 아랍국가(1978), 유럽(1979), 아프리카(1981), 아시아태평양(1983) 지역협약.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에 관한 지역 협약’은 1983년 12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국가 간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아태지역 내 교육제도의 광범위한 다양성과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경제적 배경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를 가능한 폭넓게 상호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태지역 48개 회원국은 이 1983년 협약에 비준 및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현재 21개 회원국이 비준한 상태이며, 기타 회원국들은 협약문안이 될 규범적인 문구로 수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1983년 이래 고등교육 분야에는 사립과 공립 공급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국가 간 공급자 확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대중화 등 고등교육 기관의 운영방식과 행정체계를 크게 바꿔놓은 중요한 변화들이 있어왔다. 이는 또한 평생교육을 관장하는 권한당국의 출현, 원격교육을 통한 자격획득, 질 보증의 중요성 증대, 국가자격체계의 발전, 평생교육의 확대, 학습 성과에 대한 진단도구 개발, 국가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국가 고등교육체계 수립의 필요성 증대 등 일련의 변화들로 이어졌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한 국가에서 획득한 자격을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따라서 관련 요소들이 위 아태지역 협약에 포함되고 관장되어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였다. 아태지역 고등교육 분야의 이러한 변화들에 대한 대응으로, 2005년 5월 24~25일 중국 쿤밍에서 개최된 제8차 지역위원회의에서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에 관한 지역 협약(1983)’을 개정하자는 안이 제기되었다.

## 개정절차

제8차 지역위원회의의 권고에 따라, 해당 전문가 그룹이 자문관 2인의 도움을 받아 협약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과 실무회의를 진행하였다. 아태지역 협약 개정의 목적은 1) 아태지역 국가 간 상호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서 학문적 이동을 인정하는 체계의 수립을 촉진하고, 2)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여 고등교육 지역협력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3) 지역 내 여러 국가가 제공하는 학술프로그램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역량·자격의 비교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복잡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에 관한 지역 협약(1983)’의 개정은 제18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의(2009년 4월 14~30일)에서 논의 및 승인되었다. 협약 개정 초안은 제10차 지역위원회에 제출되어 약간의 수정을 거친 뒤 승인되었으며, 동 위원회는 협약 개정안을 2009년 10월에 개최되는 유네스코 총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다. 동 총회에서는 2010~2011년 기간 중에 카테고리1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에 관한 지역 협약(1983)’의 개정안을 심의·채택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협약개정안**

아태지역 국가들은 개정되는 협약이 다음의 요소와 분야를 포함할 필요를 제기한다: 권한이 있는 인정당국, 난민/피난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의 인정, 학업기간 및 자격 인정과 관련된 기본원칙, 고등교육기관과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정보 및 추진체계 등. 본 개정안을 통해 아태지역 국가들은 자격인정과 질 보증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협약은 또한 지역 내 고등교육 분야에 미치는 세계화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을 지원할 것이다.

개정협약은 국가 내, 양자 간, 소지역 간 혹은 지역 간 기 체결된 혹은 신규 체결되는 협력체제들을 활용하여, 고등교육 자격 인정을 위한 지역협력 증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적 체계이다. 개정 아태지역 협약은 역동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태지역은 물론 국제적 차원의 고등교육 발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이다.

### **1983년 협약과 현재 협약 간의 관계**

개정협약의 제10조 3항은 동 협약과 기존 ‘아태지역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1983년)’ 간 관계를 규정한다. 동 조항은 개정협약이 *대체협약*으로서 기능함을 명시한다. 즉 개정협약의 모든 체결국은 개정협약의 타 체결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기 가입한 1983년 협약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협약의 체결국이 아닌 1983년 협약 체결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개정협약 체결국에게 1983년 협약이 계속 적용된다. 개정협약의 체결국이 늘어날수록 1983년 협약의 실질적인 적용 사례는 줄어들 것이며, 궁극에는 개정협약이 1983년 협약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정협약의 체결 당사국은 1983년 협약 가입을 지양하기로 합의한다.

#### 1983년 협약 조인국 (현재)

중국, 호주, 스리랑카, 터키, 북한, 대한민국, 네팔, 몰디브, 러시아연방, 몽골,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티칸시국,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인도,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조인시기 順)

## 전문

본 협약의 당사국은

지역 내 지리적, 문화적, 교육적,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자 하는 공통의 의지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헌장에 명시된 동 기구의 목적이 교육, 과학 및 문화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평화와 안보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상기하며,

아태지역 교육의 전통, 제도 및 가치가 매우 다양함을 인식하고,

아태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여러 고등교육 제도들이 특별한 자산임을 확신하며,

아태지역 내 지식의 선진화와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 각국의 인적 잠재력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각국 국민들, 특히 학생과 학자들이 자국 규정에 따라 각국의 교육적 자원을 접근할 수 있도록 도모함으로써 아태지역 국민들이 지역 내 문화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를 희망하며,

그 협력의 틀 안에서 고등교육 자격의 상호 인정을 통해 학생과 학자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촉진될 것임을 확신하고,

아태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발전을 확대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 국가들 간의 문화 교류를 강화할 필요성에 유념하며,

다수의 당사국들이 상호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관한 양자 또는 소지역 차원의 협정을 이미 체결하였으나, 본 협약을 통해 아태지역 전역으로 그 협력활동을 확장함으로써 자격인정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자 함을 상기하고,

본 협약이 타 지역을 관장하는 유네스코의 인정 협약들, 그리고 고등교육의 수학 및 자격의 인정에 관한 1993년 유네스코 권고안의 맥락에서도 고려되어야 함을 유념하며,

타 지역협약들이 채택된 이래 아태지역 고등교육 분야에 일어난 광범위한 변화로 인해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 교육제도가 다양해졌음을 인지하고 그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와 관행을 정비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국제적인 차원에서 유네스코의 타 지역협약 당사국들과 활발하게 국제협력을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아태지역 학생 및 학자 이동을 촉진시킬 고등교육의 자격 인정과 관련된 실질적 도전 과제들에 대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를 인식하고,

현재의 자격인정 관행을 개선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현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할 필요를 인식하며,

한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이 발행한 고등교육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는 국가 간 학문적 교류 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됨을 고려하고,

각 당사국의 문화적 맥락에 적합하게 평생교육과 교육의 민주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등교육 자격을 최대한 폭넓게 상호 인정하고자 하고,

자격인정제도 개발과 허가에 대한 각 당사국의 권리와 각국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장. 용어의 정의

### 제 1 조

본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를 적용한다.

**1983년 협약**은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 인정에 관한 지역 협약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자격을 갖춘 자가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입학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증**은 고등교육 프로그램이나 기관이 적절한 기준을 충족했음을 인정 또는 확인하는 평가 및 검토 과정을 의미한다.

**(고등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에) 입학**은 적격 지원자가 특정 고등교육 기관 그리고/또는 프로그램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절차 또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관 또는 프로그램의) 평가**는 고등교육기관 또는 프로그램의 교육적 질을 규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개인이 취득한 자격의) 평가**는 개인이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대한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의 서면 감정 또는 평가를 의미한다.

**유민**이란 살고 있던 지역이나 환경, 그리고 직업을 강제적으로 떠나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은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 관련 공식적인 결정을 담당하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정부 또는 비정부 기구를 의미한다.

**당사국 구성원**은 자격 인정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국가, 지방, 연방, 또는 지역 차원의 국가 (또는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고등교육 접근을 위한 기본 조건**은 고등교육 참여를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은 당사국의 관련 당국이 자국의 고등교육 제도에 포함된다고 인정하는 중등수준 이상의 교육, 훈련, 또는 연구를 의미한다.

**고등교육 기관**은 당사국의 관련 당국에 의해 인정을 받은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당사국의 관련당국이 자국의 고등교육 제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수료자에게는 고등교육 자격이 부여됨을 의미한다.

**준용**이란 “각각의 차이를 고려한다.”는 의미의 라틴어이다.

**비전통적 방식**이란 대안적 전달 방법을 통해서 얻은 자격을 의미한다.

**부분 이수**는 그 자체로는 완전한 학업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않되, 상당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의미한다.

**고등교육에의 접근 자격**은 고등교육 전 단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수를 증명하고 그 이수자에게 고등교육기관의 입학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당국이 수여하는 모든 자격을 의미한다.

**고등교육 자격**이란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 이수를 증명하고자 고등교육기관이 수여하는 모든 학위, 졸업증서 또는 기타 증서를 의미한다.

**질 보증**은 적정 수준이 유지 및 강화되고 있음을 이해관계자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 고등교육 제도,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질 평가와 향상 과정을 의미한다.

**선 학습 인정**은 개인이 형식 학습 또는 비형식 학습을 통해 선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격 인정**은 당사국의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이 외국에서 취득한 교육 자격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등교육**은 일차, 초등, 초급, 중급 또는 기초교육 이후의 모든 교육단계를 의미하며, 고등교육 진학준비가 그 목적 중 하나로, 이수 시 중등학교 졸업증서를 수여하거나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한다.

**(고등교육 입학을 위한) 특정요건**은 특정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하거나 특정 학문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반요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유네스코 학위 보조자료**는 리스본 인정협약이라고도 부르는 유럽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자격인정협약의 참고문서로, 이 보조자료가 붙은 원본 자격상의 개인이 추구하고 성공적으로 수료한 학문분야의 성격, 수준, 맥락, 내용 및 상태를 설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 제 2 장. 권한 있는 인정 당국

### 제 2.1 조

1. 당사국의 중앙당국이 교육자격 인정 관련 결정권을 보유할 경우, 해당 당사국은 본 협약 조항의 즉각적인 적용을 받으며 협약 조항이 당사국 영역 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의 소속 관할지가 인정관련 결정권을 보유할 경우, 해당 당사국은 서명 시점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및 가입서의 기탁 시점이나 그 이후 언제든지 자국의 헌법적 상황이나 헌법구조에 대한 간략한 진술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관할지에서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은 본 협약의 조항이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 조치를 취한다.

3. 독립 고등교육 기관이나 타 기관이 인정 관련 결정권을 보유할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적 상황이나 헌법구조에 따라 본 협약 문안을 해당기관에 전달하고, 해당 기관이 협약 조항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적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4. 제2.1조의 1, 2, 3항은 본 협약의 추후 추가조항에 규정될 당사국 의무사항에 준용된다.

### 제 2.2 조

각 당사국은 서명 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및 가입서의 기탁 시점, 그 이후 언제든지, 인정관련 각 분야 결정권을 보유한 당국들을 협약 수탁자에게 고지한다.

### **제 2.3 조**

당사국이 수여한 고등교육 자격과 관련하여, 해당 당사국이 가입한 타 조약이나 향후 가입할 타 조약이 본 협약보다 더 유리한 자격인정관련 조항을 포함할 경우,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그 유리한 조항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 3 장. 자격 평가에 관한 기본 원칙**

### **제 3.1 조**

1. 당사국이 수여한 자격의 소지자는, 권한 있는 인정기관이 요청할 시에 해당 자격에 대한 평가를 시기적절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자격 소지자의 상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소지자가 취득한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자격인정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다.

### **제 3.2 조**

당사국은 자격평가와 인정에 사용되는 절차와 기준의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 공정성 및 비차별성을 보장한다.

### **제 3.3 조**

1. 자격인정관련 결정은 해당 자격에 관한 올바른 정보에 근거하여 내려져야 한다.

2. 자격관련 정보제공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자격 소지자에게 있으며, 해당 신청자는 성실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자국 교육체제에 속하는 모든 교육기관들에게 기관들이 수여한 자격 평가를 목적으로 합리적인 정보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도록 적절하게 지도 및 독려한다. 특히, 당사국은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시 이들 기관이 적정 기간 내에 관련 정보를 자격 소지자와 인정심사 당사국의 기관 및 권한 있는 인정 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4. 자격평가 관련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는 한, 신청서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증명할 책임은 권한 있는 인정 당국에게 있다.

### **제 3.4 조**

각 당사국은 자격인정을 촉진하기 위해 자국 교육제도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제 3.5 조**

자격 인정에 대한 결정은 권한 있는 인정 기관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내려져야 하며, 그 기한은 모든 필요정보가 취합된 시점에서부터 계산하여 정한다. 인정이 보류될 경우, 인정 거부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추후에 인정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정이 보류되거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자격 소지자는 적정 기한 내에 각 당사국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 4 장.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자격 인정

### 제 4.1 조

각 당사국은 각국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위해, 자격 수여 국가와 자격인정 신청을 받은 국가 간 고등교육 접근의 일반 요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자국 고등교육 프로그램 접근의 일반 요건을 충족하는 타 당사국이 수여한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 제 4.2 조

대안적으로,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소지자로 하여금 신청을 통해 자격 평가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1조를 준용한다.

### 제 4.3 조

특정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하려면 고등교육 접근의 일반요건 외에 특수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의 권한 당국은 타 당사국에서 고등교육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그 추가요건을 제시하거나, 타 당사국에서 고등교육 자격 소지자가 그에 상응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 제 4.4 조

추가 자격시험을 필수적으로 통과해야만 고등교육에 진학할 수 있는 졸업장을 어느 한 당사국에서 취득한 경우, 타 당사국은 그 추가 요건을 자국 고등교육 접근의 선제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자국 교육제도 내에서 그러한 추가 요건 충족에 상응하는 대안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제 4.5 조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를 위배하지 않는 한, 특정 고등교육기관이나 그 기관의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허가는 제한적이거나 선택적일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 그리고/또는 프로그램에의 입학이 선택적일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고등교육 자격의 인증과정이 제3장에 명시된 공정성과 비차별성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되도록 입학 절차를 설계한다.

#### 제 4.6 조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를 위배하지 않는 한, 자격 소지자가 교육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수학하도록 할 목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교육에 사용하는 언어, 또는 기타 명시된 언어에 대한 자격 소지자의 충분한 실력 보유 여부를 입학 요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제 4.7 조

한 당사국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전통적 방식으로 취득한 자격은 타 당사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 제 4.8 조

각 당사국은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을 목적으로 자국 영토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이 수여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되, 이는 자국법의 구체적인 요건 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속한 국가와 당사국이 맺은 구체적인 협정에 의거한다.

## 제 5 장. 부분 이수 인정

### 제 5.1 조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고등교육 프로그램 틀 안에서 이수한 부분 학습을 적절히 인정하거나 또는 적어도 평가해야 한다. 타 당사국에서 이수한 부분 학습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사국의 일부 또는 전체 고등교육 프로그램 간에 상당한 차이가 없는 한, 당사국은 고등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목적으로 할 때 이러한 부분 이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 제 5.2 조

비전통적 방식을 통해 수행한 부분 학습에 대해 제 5.1조를 준용한다.

### 제 5.3 조

특히 다음의 경우 당사국은 부분 이수에 대한 인정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a) 아래 기관 간 기존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i) 해당 부분 이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고등교육 기관 혹은 권한 있는 인정 당국과

(ii) 해당 부분 이수 인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고등교육 기관 혹은 권한 있는 인정 당국

(b) 학생이 명시된 부분 이수를 성공적으로 충족했음을 보증하는 증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해당 고등교육기관이 발급한 경우

## 제 6 장. 고등교육 자격 인정

### 제 6.1 조

고등교육 자격이 증명하는 지식 및 기술에 근거하여 인정관련 결정이 내려지는 한,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수여한 고등교육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 제 6.2 조

대안적으로,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에서 발급한 고등교육 자격 소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자격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1조를 준용한다.

### 제 6.3 조

한 당사국의 교육시스템 틀 내에서 국내 규제요건에 따라 비전통적 방식으로 획득한 고등교육 고등교육 자격에 대해 제 6.1조 및 6.2조를 준용한다.

### 제 6.4조

타 당사국이 수여한 고등교육 자격을 한 당사국이 인정하면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 (a) 상위 고등교육 기회에의 접근: 관련 시험 응시나 대학원 과정 준비기회를 포함하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사국의 자격 소지자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됨
- (b) 학위 명칭의 사용: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사국과 관할지의 법과 규제에

준함

- (c) 취업기회에의 접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사국과 관할지의 법과 규제에 준함

#### 제 6.5 조

한 당사국의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은 타 당사국이 수여한 고등교육 자격에 대해 다음 대상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대한 권고의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

- (a) 교육프로그램 입학 관련 교육기관
- (b) 기타 권한이 있는 인정 당국
- (c) 잠재 고용주

#### 제 6.5 조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에서 운영되는 외국교육기관이 수여한 고등교육 자격을 자국법의 구체적인 요건 또는 해당 기관이 속한 국가와 체결한 특정 협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 제 7 장. 난민, 유민 및 피난 상황에 처한 자들이 보유한 자격의 인정

#### 제 7 조

각 당사국은 자국 교육제도의 틀 안에서 자국 헌법,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난민, 유민 및 피난 상황에 있는 자가 당사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증빙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접근 요건 및

취업활동을 위한 자격 인정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선 학습 인정 등을 포함하는 평가 절차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가용 조치를 취한다.

## 제 8 장. 평가인증 및 인정과 관련된 정보

### 제 8.1 조

각 당사국은 자국 고등교육 제도에 속한 모든 기관과 자국의 질 보증체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 기관에서 수여한 자격의 질이 인정을 받고자 하는 타 당사국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타 당사국의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고등교육제도 개요
- (b) 고등교육제도에 속한 여러 유형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개요 및 각 기관의 전형적인 특징
- (c) 고등교육제도 하에 인정 혹은 인가를 받은 (공립 및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목록, 다양한 유형의 자격을 수여할 수 있는 각 기관의 권한, 기관 및 프로그램의 유형별 접근요건
- (d) 질 보증 체제 개요
- (e) 해당 당사국이 자국 영토 밖에 위치하나 자국 교육제도에 속한다고 간주하는 교육기관의 목록

### 제 8.2 조

각 당사국은 고등교육 자격 인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정확한 관련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 (a) 당사국의 고등교육 제도와 자격에 대한 권위 있고 정확한 정보에의 접근 촉진
- (b) 타 당사국들의 고등교육 제도와 자격에 대한 정보의 접근 촉진
- (c) 자국 법령과 규제에 준한 인정 및 자격평가 관련 권고와 정보 제공

### 제 8.3 조

각 당사국은 고등교육 정보를 제공할 국가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국가정보센터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 제 8.4 조

당사국은 국가정보센터를 통해 혹은 여타의 방법으로 다음의 활용을 촉진한다:

- (a) “유네스코 학위보조자료” 또는 기타 유사 인정보조자료
- (b)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UNESCO-OECD 가이드라인” 및 자국 법령과 규제에 준하여 당사국의 고등교육 기관이 생성하는 유사문서

## 제 9 장. 이행

### 제 9.1 조

본 협약의 이행을 총괄, 촉진 및 원활하게 하는 담당기관은 ‘아태지역

고등교육관련 자격인정협약 위원회'로,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 제 9.2 조

1. 설립된 위원회는 각 당사국 당 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2.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는 위원회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또한 아태지역 내 인정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의 대표도 참관인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당사국 과반수의 투표를 얻어 권고안, 선언문, 의정서 및 모범 사례를 채택하여 당사국들의 권한 당국이 본 협약을 이행하고 고등교육 자격 인정신청을 심의하는 데 있어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문안들이 당사국들에게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국들은 동 문안들을 적용하고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이 이를 주지하여 적용하도록 권장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채택된 고등교육 수학 및 학위 인정에 관한 협약들을 적용하기 위해 위원회는 유네스코 지역위원회와의 유대를 유지한다.
5. 당사국의 단순 다수는 정족수를 형성한다.
6. 위원회는 의사규칙을 채택하고 최소 3년마다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본 협약이 발효된 지 1년 이내에 첫 회합을 가지며, 처음 5년간은 매해 회동하여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7. 위원회 사무국의 역할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한다.

## 제 9.3 조

1. 당사국들은 학문이동성과 인정에 관한 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각국의 권한 있는 인정 당국이 본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조력을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정보센터 중 하나를 이 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지명한다. 한 개 이상의 국가정보센터가 설립 혹은 유지되고 있는 경우, 모두가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지만 해당 국가정보센터들은 1개의 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다.
3. 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는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네트워크 소장과 사무소를 선출한다.
4. 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 사무국의 역할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위임되어 관리된다.
5. 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는 학업 인정 및 이동성과 관련된 정보를 당사국들로부터 수집한다.

## **제 10 장. 종결 조항**

### **제 10.1 조**

1. UNESCO 모든 회원국 및 교황청은 본 협약에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할 수 있다.
2. 이들 국가들은 동 협약의 적용을 받는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명할 수 있다.

- (a)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에 대한 유보 없는 서명
- (b)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이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
- (c)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및 가입서의 기탁

2.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및 가입서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이하 “수탁자”로 칭한다.

### **제 10.2 조**

본 협약은 아태 지역의 5개 유네스코 회원국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일자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익월 첫째 날부터 효력을 발휘 한다.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기로 동의를 표한 일자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익월 첫째 날부터 협약이 효력을 발휘한다.

### **제 10.3 조**

1. 1983년 협약의 기존 당사국이 아닌 본 협약의 당사국들은 1983년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것을 지양하기로 합의한다.

2. 1983년 협약의 당사국이면서 동시에 본 협약의 당사국인 국가들은

- (a) 타 당사국과의 상호 관계에 있어 본 협약의 조항들을 적용한다.
- (b)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1983년 협약의 당사국과의 관계에서는 1983년 협약을 계속 적용한다.

### **제 10.4 조**

1. 모든 국가는 서명 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 기탁 시 본 협약이 적용될 영토 혹은 영토들을 명시할 수 있다.
2. 모든 국가는 수탁자에게 선언서를 보냄으로써 향후 언제라도 선언서에 명시하는 다른 영토로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당해 영토 관련, 본 협약은 수탁자가 선언서를 수령한 일자로부터 한 달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익월 첫째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제 10.5 조**

1. 당사국은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본 협약을 폐지할 수 있다.
2. 동 협약의 폐지는 수탁자가 통지를 수령한 일자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익월 첫째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폐지는 본 협약 조항에 따라 앞서 이루어진 인정관련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당사국이 본 협약의 목적 및 목표 성취에 필수적인 조항을 위반한 결과로 초래된 협약 운영의 종료 및 정지는 국제법에 따라 처리한다.

### **제 10.6 조**

1. 각국은 서명 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 기탁 시에 본 협약의 다음 조항 중 1개 이상의 조항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유보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할 수 있다: 제4.7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6.3조 및 제8.4조. 그 외의 여타 조항들은 유보될 수 없다.
2. 상기 항에 따라 유보의사를 표한 당사국은 수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유보사항을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수탁자가 통지를 수령한 날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3. 본 협약의 특정 조항에 대해 유보의사를 표한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유보가 부분적이거나 조건부일 경우에는 당사국이 수용한 범위에 한해 타 당사국이 조항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 10.7 조**

1. 본 협약의 개정은 당사국의 2/3 과반수 찬성에 따라 협약위원회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 채택된 개정안은 본 협약의 보충협약에 포함된다. 보충협약에는 개정협약의 효력발생 양식이 명시되어야 하며,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정안에 구속될 당사자들의 동의 표시를 요구해야 한다.

2. 상기 조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는 경우라도 본 협약의 제3조 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개정에 대한 모든 제안은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위원회 개최 최소 3개월 전에 당사국들에게 전달한다. 수탁자는 유네스코 집행 위원회에도 이를 고지해야 한다.

### **제 10.8 조**

다음의 사항이 이루어졌을 경우, 수탁자는 본 협약의 당사국들 및 여타 유네스코 회원 국가들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a) 제10.1조 2항에 따른 서명

- (b) 제10.1조 2항에 따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및 가입서의 기탁
- (c) 제10.2조에 따라 본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날짜
- (d) 제10.6조에 따른 유보 및 유보의 철회
- (e) 제10.5조에 따른 본 협약의 폐지
- (f) 제10.4조에 따른 선언서
- (g) 제10.7조에 따른 제안
- (h) 제2.2조에 따라 권한 있는 인정당국에 관해 나온 통지
- (i) 본 협약에 관한 여타 모든 행위, 통지 또는 의사소통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대표들은 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아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XXXX년 XX월 XX일 XX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로 작성 되었으며, 원본은 유네스코 기록보관소에 기탁한다. 인증된 협약의 부분 1부는 제10.1조에 언급된 모든 당사국 및 유엔 사무국에 송부한다.

# **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 **(Tokyo Convention)**

### **Explanatory Remarks**

□

#### **Introduction**

The six conventions on the recognition of higher education studies and qualifications adopted under the aegis of UNESCO date from the late seventies and early eighties. Six normative instruments to regulate mutual recognition of higher education studies and degrees were adopted, starting with the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June 1974). This was followed over the next ten years by five similar conventions covering all regions of the worl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the Arab and European States bordering on the Mediterranean (the Mediterranean Convention) (1976), the Arab States (1978), Europe (1979), Africa (1981), Asia and the Pacific (1983).

The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was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States in Bangkok, Thailand on 16th December 1983. This convention desires to ensure that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are recognised as widely as possible, considering the great diversity of education system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richness of its cultural, social, political, philosophical, religious and economic backgrounds.

The Member States of Asia-Pacific (48) including two Associate Members have automatic rights to ratify and participate in the 1983 Convention. While at present, Twenty (21)\* countries have acceded to its ratification, other Member States are waiting for its revision with less-prescriptive legal texts.

Since 1983, there have been some significant changes in higher education which have included the exponential growth of both private and public providers, increase of cross-border provider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continued massification in higher education, which has dramatically changed the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emergence of lifelong education, qualifications earned through distance learning, a greater focus on quality assurance, the development o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s, developing assessment tools to measure learning outcomes, the need to build national capacity and sustainable national higher education systems.

These factors have resulted in greater pressure to ensure that qualifications acquired in one country are recognised in other countries and hence the need to ensure that these factors should be included and covered by the reviewed conventions. To respond to these new changes in higher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it was proposed to revise the 1983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during the Ninth Regional Committee Meeting held in Seoul, Korea in May 22-23, 2007.

### **The Revision Process**

Further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ninth Session of the regional committee meeting, a review process and working party was convened and led by a technical working group with the assistance of two consultants. The revised 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aimed to: 1)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mechanisms to recognise academic mobility as a major strategy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solidarity across Asia-Pacific 2)

reinforce cultural identity to achieve fruitful regional cooperation in higher education; and 3) recognise the unique nature and diversity of academic programmes offered in the various countries across the region and the complexity of establishing comparability of competencies and qualifications in order to promote lifelong learning.

At the 181<sup>st</sup> session of the UNESCO Executive Board (14–30 April 2009), the revision process of the 1983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was discussed and approved. The draft of the Revised Regional Convention was presented to the tenth Session of the Regional Committee which approved the draft with minor amendments and a recommendation that the Revised Regional Convention be forwarded to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in October 2009, where the final decision was made to convene, during the 2010–2011 biennium,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States (Category I) with a view to examination and adoption of amendments to the 1983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 **The Revised Convention**

Asia–Pacific countries view the importance of integrating the following elements/sections in the revisions: competencies of authorities, basic principles related to assessment of qualifications, partial studies, and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held by refugees, displaced persons, and persons in similar situation, information on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programmes and implementation mechanisms. This revision will entail transparency and the presence of reliable informa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and quality assurance. It will also enable the region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higher education in Asia–Pacific.

The revised 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is a legal framework which provides general guidelines intended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co-operation regarding recogni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through national, bilateral, sub-regional and regional mechanisms that are already in place or created for this purpose. It is envisaged that the revised 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will be a dynamic tool which must be adjusted regularly to the developments in higher education at both the Asia-Pacific regional level as well as international levels.

#### **Relationship of the Present Convention to the 1983 Regional Convention**

Article X.4 in the Revised Regional Convention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Convention and the previous UNESCO Convention on the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1983). The article underlines the function of this Convention as a *replacement Convention*, in that any Party to the present Convention ceases to apply the 1983 Convention mentioned in this Article to which it is a Party, but only with regard to other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Parties shall still be bound by the 1983 Convention to which they are a Party with regard to other Parties to the 1983 Convention, but not to the present Convention. The instances of concrete application of the 1983 Convention will thus be reduced as the number of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increases. It is hoped that the present Convention will eventually replace the 1983 Convention. In addition, the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undertake to abstain from becoming Parties to the 1983 Convention.

**List of current signatories  
States**

China

Australia

Sri Lanka

Turkey

Democratic People's Republ

Republic of Korea

Nepal

**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 **PREAMBLE**

The Parties to this Convention:

**Guided** by a common will to strengthen their geographical, cultural, educational and economic ties;

**Recalling** that, 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of UNESCO, "the purpose of the Organization is to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by promoting collaboration among the nations through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Recognising** the substantial diversity that exists within the education traditions, systems and values in Asia-Pacific

**Convinced** that the diversity of the cultures and higher education systems existing in Asia-Pacific constitutes an exceptional resource;

**Committed** to strengthening and extending collaboration among the Parties with a view to making optimal use of their human potential so as to encourage the advancement of knowledge and to continually improve th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within Asia-Pacific

**Desirous** of enabling the peoples of Asia-Pacific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cultural resource by facilitating access for the nationals of each Party, in particular its students and academics, to the educational resources of each Party, with due regard to domestic regulation

**Convinced** that, within the framework of such collaboration, the recogni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will facilitate international mobility of students and academics;

**Mindful** of the need to intensify cultural exchanges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he promotion of peace in Asia-Pacific

**Recalling** that many Parties have concluded bilateral or sub-regional agreements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among themselves, but desirous of strengthening such efforts by extending collaboration throughout Asia-Pacific by means of this Convention;

**Mindful** that this Convention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the UNESCO Recognition Conventions covering other Regions of the world, as well as the 1993 UNESCO Recommenda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and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Conscious** of the wide ranging changes in higher education in Asia-Pacific since these Conventions were adopted, resulting in considerably increased diversification within and among national education systems, and of the need to adapt legal instruments and practice to reflect these developments;

**Willing** to engage in activ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t the global level with Parties to the other UNESCO Regional Conventions

**Conscious** of the need to find common solutions to practical challenges in regard to the recogni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which will facilitate mobility of students and academics in Asia-Pacific

**Conscious** of the need to improve current recognition practice and to make it more transparent and better adapted to the current situation of higher education in Asia-Pacific

**Considering** that the recognition by all the Parties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obtained in other Parties represents an important measure for promoting academic mobility among the Parties;

**Desirous** of ensuring the recognition as widely as possible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in order to promote lifelong education and the democratisation of education in a manner suited to the cultural context of each Party

**Respectful** of each Party's right to create and grant a system for qualification, and of the autonomy of its institutions

Have agreed as follows:

## SECTION I. DEFINITION OF TERMS

### Article I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following definitions apply:

**1983 Convention** means the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Access (to higher education)** means the right of qualified candidates to apply and to be considered for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means a process of assessment and review that enables a higher education programme or institution to be recognised or certified as meeting appropriate standards;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programmes)** means the act of, or system for, allowing holders of qualifications to pursue studies in higher education at a given institution and/or a given programme;

**Assessment (of institutions or programmes)** means the process for establishing the educational quality of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or programmes;

**Assessment (of individual qualifications)** means the written appraisal or evaluation of an individual's foreign qualifications by a competent recognition authority;

**Competent Recognition Authority** means a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body officially charged with making decisions on the recognition of foreign qualifications;

**Components of a Party** means public entities at the national, provincial, federal or regional level;

**General Requirements for Access (to Higher Education)** mean conditions that must in all cases be fulfilled for access to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means post-secondary education, training or research that is recognis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of a Party as belonging to its higher education system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means an establishment providing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Programme** means a programme of study recognised by the relevant authorities of a Party as belonging to its higher education system, and the completion of which provides the student with a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means any degree, diploma or other certificate issued by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attesting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a higher education programme;

**Mutatis Mutandis** is a Latin phrase meaning "with respective differences taken into consideration"

**Non-traditional Qualifications** refer to qualifications obtained through modes that do not necessarily meet the general requirements for higher education, such as part time, mixed modes and non-degree based programmes;

**Partial Studies** means any homogeneous part of a higher education programme, while not a complete programme in itself, can be equated with a significant acquisition of knowledge and skill;

**Qualification Giving Access to Higher Education** means any qualification issued by a relevant authorities attesting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an education programme and giving the holder of the qualification the right to be considered for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

**Quality Assurance** means an on-going process of evaluating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a higher education system, institution or programme to assure stakeholders that acceptable standards are being maintained and enhanced;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means a process to formally acknowledge the knowledge and skills a person has as a result of formal and/or non-formal learning;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means a formal acknowledgment as defined and given by the competent recognition authorities of a Party of the value of a foreign educational qualification with a view to giving access to educational and/or employment activities;

**Secondary Education** means that stage of studies of any kind which follows primary, elementary, preparatory or intermediate or basic education and the aims of which may include preparing students for higher education, leading to a secondary school leaving certificate or enabling students to enrol in higher education; and

**Specific Requirements (for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 means conditions that must be fulfilled, in addition to the general requirements, in order to gain admission to a particular higher education programme, or for the award of a specific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in a particular field of study.

## **SECTION II. THE COMPETENCIES OF AUTHORITIES**

### **Article II.1**

1. Where central authorities of a Party are competent to make decisions in recognition matters, that Party shall immediately be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shall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s provisions within the Party's territory.
2. Where the competence to make decisions in recognition matters lies with components of a Party, the Party shall furnish the depository with a brief statement of its constitutional situation or structure at the time of signature or whe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or any time thereafter. In such cases, the competent recognition authorities of the components of the Party so designated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within the Party's territory.
3. Where the competence to make decisions in recognition matters lies with individua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r other entities, each Party according to its constitutional situation or structure, shall transmit the text of this Convention to these institutions or entities and shall take all possible steps to encourage the favourable consideration and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of this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obligations of the Parties under subsequent articles of this Convention.

#### **Article II.2**

At the time of signature or whe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each Party shall inform the depository of this Convention of the authorities that are competent to make different categories of decisions in recognition matters.

#### **Article II.3**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derogate from any more favourable provisions concerning the recogni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issued in one of the Parties that are contained in or stem from an existing or a future treaty by which that Party is bound.

### **SECTION III. BASIC PRINCIPLES RELATED TO THE ASSESSMENT OF QUALIFICATIONS**

#### **Article III.1**

1. Holders of qualifications issued in one of the Parties shall have adequate access, upon request to the appropriate body, to an assessment of these qualifications in a timely manner.
2. In order to assure this right for holders of qualifications, each Party undertakes to make appropriate arrangements for the assessment of an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with the main focus on knowledge and skills achieved.

#### **Article III.2**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the procedures and criteria used in the assessment and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are transparent, coherent, reliable, and fair and non-discriminatory.

#### **Article III.3**

1. Decisions on recogni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appropriate information on the qualifications for which recognition is sought.
2. In the first instanc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adequate information rests with the holder of the qualification, who shall provide such information in good faith.

3. The Parties shall instruct or encourage, as appropriate, all education institutions belonging to their education systems to comply with any reasonable request for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assessing qualifications earned at the said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Parties shall encourage institutions belonging to their education systems to provide, upon request and within a reasonable timeframe, relevant information to the holder of qualifications or to the institution or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Party in which recognition is sought.
  
4. As long as the information relevant to the assessment of the qualification is appropriately provided, the responsibility to demonstrate that an application does not fulfil the relevant requirements lies with the body undertaking the assessment.

#### **Article III.4**

Each Party shall ensure,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that adequate and clear information on its education system is provided.

#### **Article III.5**

Decisions on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shall be made within a reasonable time limit specified beforehand by the competent recognition authority and calculated from the time all necessary information in the case has been provided. If recognition is withheld, the reasons for the refusal to grant recognition shall be stated, and information shall be given concerning possible measures the holder of the qualification may take in order to obtain recognition at a later stage. If recognition is withheld, or if no decision is taken, the holder of the qualifications shall be entitled to make an appeal within a reasonable time limit.

## **SECTION IV.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GIVING ACCESS TO HIGHER EDUCATION**

### **Article IV.1**

Each Party shall recognise, for the purpose of access to each of its higher education programmes, the qualifications issued by the other Parties that meet the general requirements for access to these respective higher education programmes, unless a substantial difference can be shown between the general requirements for access in the Party in which the qualification was obtained and those in the Party in which recognition of the qualification is sought.

### **Article IV.2**

Alternatively, it shall be sufficient for a Party to enable the holder of a qualification issued in one of the other Parties to obtain an assessment of that qualification, upon request by the holder,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IV.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uch a case.

### **Article IV. 3**

Where admission to a particular higher education programme is dependent on the fulfilment of specific requirements in addition to the general requirements for access, the competent recognition authorities of the Party concerned may impose the additional requirements on holders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obtained in the other Parties or assess whether the holder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obtained in other Parties has fulfilled comparable requirements.

### **Article IV.4**

Where, in a Party in which they have been obtained, school leaving certificates give access to higher education only in combination with additional qualifying examinations as a prerequisite for access, the other Parties may make access conditional on these requirements or offer an alternative for satisfying such additional requirements within their own educational systems.

**Article IV.5**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IV.1 –IV.4, admission to a giv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or to a given programme within such an institution, may be restricted or selective. In such cases in which admission to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and/or programme is selective, admission procedures should be designed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the accreditation of foreign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basic principles of fairness and non-discrimination described in Section III.

**Article IV.6**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IV.1 – IV.5 of this Section, admission to a give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may be made conditional on demonstration by the holder of the qualification of sufficient competence in the language or languages of instruction of the institution concerned, or in other specified languages in order for the holder of the qualification to profitably undertake the studies in question.

**Article IV.7**

In the Parties in which access to higher education and qualifications may be obtained non-traditionally, on similar qualifications obtained in other Parties shall be assessed in a similar manner as non-traditional qualifications earned in the Party in which recognition is sought.

**Article IV.8**

For the purpose of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 programmes, each Party may make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ssued by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operating in its territory contingent upon specific requirements of national legislation or specific agreements concluded with the Party of origin of such institutions.

## **SECTION V. RECOGNITION OF PARTIAL STUDIES**

### **Article V.1**

Each Party shall recognise, where appropriate, partial studies completed within the framework of a higher education programme in another Party. This recognition shall consist in taking such partial studies into account for the purposes of the completion of a higher education programme in the Party in which recognition is sought, unless substantial differences can be shown between the partial studies completed and the part and/or all of the higher education programme in the Party in which recognition is sought.

### **Article V.2**

Alternatively, it shall be sufficient for a Party to enable a holder of the qualification who has completed partial studies within the framework of a higher education programme in another Party to obtain an assessment of the partial studies, upon request by the holder of the qualification concerned,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V.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uch a case.

### **Article V.3**

In particular, each Party shall facilitate recognition of partial studies when:

- (a) there has been a previous agreement between:
  - i.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or the competent recognition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relevant partial studies and,
  - ii.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or the competent recognition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recognition that is sought; and
  
- (b)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in which the partial studies have been completed has issued a certificate or transcript of academic records attesting that the student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stipulated requirements for the said partial studies.

## **SECTION VI. RECOGNI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 **Article VI.1**

To the extent that a recognition decision is mainly based on the knowledge and skills certified by a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each Party shall recognise the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conferred in another Party, unless a substantial difference can be shown.

### **Article VI.2**

Alternatively, it shall be sufficient for a Party to enable the holder of a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issued in another Party to obtain an assessment of that qualification, upon request by the holder of the qualification,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VI.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such a case.

### **Article VI.3**

Recognition in a Party of a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issued in another Party may have the following consequences:

- (a) access to further higher education studies, including relevant examinations and/or to preparations for a postgraduate course on the same conditions as those applicable to holders of qualifications of the Party in which recognition is sought;
- (b) the use of an academic title,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y or a jurisdiction thereof, in which recognition is sought; and
- (c) access to employment opportunities, subject to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arty or jurisdiction thereof, in which recognition is sought.

### **Article VI.4**

An assessment in a Party of a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issued in another Party may take the form of advice:

- (a) for general employment purposes;
- (b) to an educational institution for the purpose of admission to its programmes; and

(c) to any other competent recognition authority.

#### **Article VI.5**

Each Party may make the recogni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issued by foreig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operating in its territory contingent upon specific requirements of national legislation or specific agreements concluded with the Party of origin of such institutions.

### **SECTION VII.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HELD BY REFUGEES, DISPLACED PERSONS AND PERSONS IN A REFUGEE-LIKE SITUATION**

#### **Article VII**

Each Party shall make all reasonable efforts within the framework of its education system and in conformity with its constitutional, legal, and regulatory requirements to develop procedures, including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designed to assess fairly and expeditiously whether refugees, displaced persons and persons in a refugee-like situation fulfil the relevant requirements for access to higher education programmes or for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for employment activities, even in cases in which the qualifications obtained in one of the Parties cannot be proven through documentary evidence.

### **SECTION VIII. INFORMATION ON ASSESSMENT/ACCREDITATION AND RECOGNITION MATTERS**

#### **Article VIII.1**

Each Party shall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on any institution belonging to its higher education system, and on its quality assurance system, with a view to enabling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other Parties to ascertain whether

the quality of the qualifications issued by these institutions justifies recognition in the Party in which recognition is sought. This includes:

- (a) a description of its higher education system;
- (b) an overview of the different type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elonging to its higher education system, and of,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institution;
- (c) a list of recognised and/or accredite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public and private) belonging to its higher education system, indicating their powers to award different types of qualifications and the requirements for gaining access to each type of institution and programme;
- (d) an explanation of quality assurance mechanisms; and
- (e) a list of educational institutions located outside its territory which the Party considers as belonging to its education system.

#### **Article VIII.2**

Each Party shall provide relevant, accurate and up-to-date information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by:

- (a) facilitating access to authoritative and accurate information on its higher education system and qualifications;
- (b) facilitating access to information on the higher education systems and qualifications of the other Parties; and
- (c) giving advice or information on recognition matters and assessment of qualification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 **Article VIII.3**

Each Party shall take adequate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a national information centre that will provide higher education information. The form of the national information centre could vary.

#### **Article VIII.4**

The Parties shall promote, through their national information centres or otherwise, the use of the:

- (a) "*UNESCO Diploma Supplement*" and/or any comparable document produced by their respectiv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 (b) the UNESCO/OECD Guidelines for Quality Provision in Cross-border Higher Education and/or any comparable document produced by the Parties' respectiv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ubject to their respectiv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 **SECTION IX. IMPLEMENTATION**

### **Article IX.1**

The body to oversee, promote and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he Committee of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concerning Higher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 **Article IX.2**

1. The Committee, which is hereby established, shall be composed of one representative of each Party.
2. States which are not Parties to this Convention may participate in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as observers. Representatives of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ive in the field of recognition in the Region may also be invited to attend meetings of the Committee as observers.
3. The Committee may adopt, by a majority of the Parties, recommendations, declarations, protocols and models of good practice to guide the competent recognition authorities of the Parties in their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and in their consideration of applications for the

recogni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While they shall not be bound by such texts, the Parties shall use their best endeavours to apply them, to bring them to the atten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o encourage their application.

4. The Committee shall maintain its links to the UNESCO Regional Committees for the Applications of Conventions on the Recognition of Studies, Diplomas and Degrees in Higher Education adopted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5. A simple majority of the Parties shall constitute a quorum.
6. The Committee shall adopt its Rules of Procedure. It shall meet in ordinary session at least every three years. The Committee shall meet for the first time within a year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nd annually for the first five years after that in order to manage its implementation.
7. The Secretariat of the Committee shall be entrus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 **Article IX.3**

1. The Asia-Pacific Network of national information centres on academic mobility and recognition shall be established and shall uphold and assist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by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
2. Each Party shall appoint a member of their national information centre to the Asia-Pacific Network of national information centres. In cases in which more than one national information centre is established or maintained, all these shall be members of the Network, but the national information centres concerned shall dispose of only one vote.

3. The Asia-Pacific Network of national information centres shall meet annually in plenary session. It shall elect its President and Bureau.
4. The Secretariat of the Asia-Pacific Network of national information centres shall be entrus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5. The Asia-Pacific Network of national information centres shall collect relevant information from the Parties relating to academic recognition and mobility.

## **SECTION X. FINAL CLAUSES**

### **Article X.1**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and ratification, approval or acceptance by all UNESCO Member States
2. These States may express their consent to be bound to this Convention by:
  - (a) a signature without reservation as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 (b) a signature subject to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r
  - (c)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3.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UNESCO.

### **Article X.2**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one month after five States from UNESCO Member States have expressed their consent to be bound by this Convention.

It shall enter into force for each other Stat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one month after the date of expression of its consent to be bound by the Convention.

### **Article X.3**

1. The Parties to this Convention which are not already Parties to the 1983 Convention undertake to abstain from becoming Parties to the 1983 Convention
2. Parties to this Convention that are at the same time Parties to the 1983 Convention:
  - (a) shall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their mutual relations; and
  - (b) shall continue to apply the 1983 Convention in their relations with any other Party to the 1983 Convention that is not a Party to this Convention.

### **Article X.4**

1. Any State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whe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specify the territory or territories to which this Convention shall apply.
2. Any Party may, at any later date, by a declaration addressed to the depositary, extend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o any other territory specified in the declaration. In respect of such territory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one month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such declaration by the depositary.

### **Article X.5**

1. Any Party may, at any time, denounce this Convention by means of a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epositary.
2. Such denunciation shall become effectiv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xpiration of a period of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depository. However, such denunciation shall not affect recognition decisions taken previously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3. Termination or 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this Convention as a consequence of a violation by a Party of a provision essential to the accomplishment of the object or purpose of this Convention shall be address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 **Article X.6**

1. Any State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whe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declare that it reserves the right not to apply, in whole or in part,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Article IV.7, Article V.1, Article V.2, Article V.3, Article VI.3, and Article VIII.4. No other reservation may be made.
2. Any Party that has made a reservation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may wholly or partly withdraw it by means of a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depository. The withdrawal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receipt of such notification by the depository.
3. A Party that has made a reservation in respect of a provision of this Convention may not claim the application of that provision by any other Party; it may, however, if its reservation is partial or conditional, claim the application of that provision in so far as it has itself accepted it.

#### **Article X.7**

1.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may be adopted by the Committee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Parties. Any draft amendment so adopted shall be incorporated into a Protocol to this Convention. The Protocol shall specify the modalities for its entry into force which, in any event, shall require the expression of consent by the Parties to be bound by it.

2. No amendment may be made to Section III of this Convention under the procedure of paragraph 1 above.
3. Any proposal for amendments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epository, who shall transmit it to the Parties at least three months before the meeting of the Committee. The depository shall also inform the Executive Board of UNESCO.

#### **Article X.8**

When any of the following has been accomplished, the depository shall notify the Parties to this Convention, as well as the other Member States of the UNESCO Asia-Pacific Region of:

- (a) any signature made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Article X.1.2;
- (b) the deposit of any instrument of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X.1.3
- (c)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X.2;
- (d) any reservation and the withdrawal thereof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X.6
- (e) any denunciation of this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X.5
- (f) any declar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X.4
- (g) any proposal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X.7
- (h) any information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II.2
- (i) any other act, notification or communication relating to this Convention.

In witness thereof the undersigned representatives, being duly authorised, have signed this Convention.

Done at xxx, [on date] in the English, Chinese, and Russian languages, the three texts being equally authoritative, the original version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UNESCO. A certified copy shall be sent to all Parties referred to in Article X.1 and to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부록 2>

## Toolkit for the Recognition of Foreign Qualifications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학위 인정 지역협약에 관한 툴킷

### 1. 개괄

아태지역 28개국 장관급 각료들이 참석한 UNESCO 국제회의(11월 25일(금)~26일(토), 동경)에서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학위 인정 지역협약(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1983	아시아-태평양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 지역협정에 14 개 국가서명(호주, 부탄, 중국,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터키,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베트남등)
1985	1985 년 10 월 23 일 실행
1984 -2011	각 나라들 연도별 비준안 실행  Republic Other state parties, including the People’s of China (1984), Australia (1985), Sri Lanka (1986), Turkey (1986),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89), Nepal (1989), Maldives (1990), the Russian Federation (1990), Mongolia (1991), Tajikistan (1993), Armenia (1993), Azerbaijan (1995), the Holy See (1995), Kyrgyzstan (1996), Turkmenistan (1997), Kazakhstan (1997), India (2000),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the Philippines (2003), and Indonesia (2008)
2005	UNESCO 기관이 중국에서 개최된 “제 8 차 지역 위원회회의”때 아시아-태평양지역 고등교육 학위 인정 지역협정 명칭 개정을 제안

2011	2011년 11월 26일 일본 도쿄 명칭 개정 : 고등 교육 학위인정에 대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협정 <i>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i>
------	---

## 2. 용어의 정의

- **1983 Convention** : 1983년 12월 16일, 방콕에서 채택된 연구나 학위 증서 등과 관련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고등 교육 협약
- **Access to higher education** : 고등 교육으로의 자격 평가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고등교육입학심사를 받고 지원할 수 있는 권리
- **Accreditation**: 인증  
 적절한 기준의 충족여부 증명을 위한 고등 교육 프로그램이나 제도를 평가하고 검토하는 과정
-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programmes**: 고등교육기관 과 프로그램의 입학허가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특정 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 고등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활동 또는 시스템
- **Assessment of institutions or programmes**: 기관 또는 프로그램의 평가  
 고등 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의 교육 품질을 설립하는 과정
- **Competent recognition authority**: 관할 인정 기관  
 공식적으로 정부에 의한 외국 자격 심사 결정권을 갖춘 정부 또는 비정부 조직
- **Displaced person**: 난민  
 직업이나 환경에서 강제적으로 움직여지는 사람
-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Statement**: 고등교육 자격 증명서  
 학생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명시하는 것이 목표로 상호인증과 평가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도구.

- **General requirements for access to higher education:** 고등 교육으로의 접근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고등 교육평가 대한 조건들을 충족 시켜야 한다.

- **Higher education:** 고등 교육

고등 교육 시스템에 속하는 승인기관이 인정하는 고등 수준의 교육, 훈련 혹은 연구를 의미

-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고등 교육 기관

고등 교육을 제공하는 관계당국에 의해 설립된 기관

- **Higher education programme:** 고등 교육 프로그램: 고등교육시스템에 의해 인가 받은 연구 프로그램으로 고등교육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속해 있다.

- **Non-traditional modes:** 비전통적 모드

자격 매커니즘에 대한 대안

- **Partial studies:** 부분적 연구

고등 교육 프로그램이 완전히 동등하진 않지만 지식이나 기술이 상당히 유사함

- **Qualification that gives access to higher education:** 고등 교육으로 접근을 위한 자격

고등교육 입학이 고려될 수 있는 관계 기관에서 발급된 자격

- **Quality assurance:** 품질 보증

고등교육 품질향상과 평가를 위한 과정

-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 이전 학습의 인정

정규, 비정규적인 형태의 학습의 결과를 인정하는 과정

-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자격 인정

공식적인 인정은 외국 교육 자격의 가치를 인정하는 기관에 의해 주어진다.

- **Secondary education:** 중등 교육

고등교육의 이전 단계로서 중등교육의 증명서는 학생들을 고등교육과정

에 등록할 수 있게 한다.

· **Specific requirements for admission to higher education:** 고등 교육 입학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

교육의 특정 분야에 입학할 얻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들.

· **UNESCO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Statement:** 유네스코 고등 교육 자격 검증서

개인의 이름이 명시된 학위와 함께 연구상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참고 문서

### 3. 서문

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의 UNESCO 지역 기관은 이 지역의 학술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 고등교육학위인정에 대한 틀킷을 개발하였다. 주된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고등교육 자격요건을 평가할 때 참고 할 수 있는 공통의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참고1] 아태지역 고등교육 협약 개정

	제목	주요내용
전문		▪ 개정협약의 의의 및 목적
제1장	용어의 정의	▪ ‘권한 있는 인정당국’, ‘고등교육 학위 등’ 주요 용어 정의
제2장	권한당국	▪ 당사국은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 인정에 대한 권한을 지닌 기구(권한당국)가 본 협약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제3장	학위 인정의 기본원칙	▪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 소지자는 공정성 및 비차별 원칙아래 인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음
제4장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자격 인정	▪ 당사국은 타 당사국과 고등교육 접근의 일반요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타 당사국이 수여한 학위를 인정해야 함

제5장	부분 이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국의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타 당사국에서 이수한 부분 학습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이러한 부분 이수를 인정해야 함</li> </ul>
제6장	고등교육 학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국은 타 당사국과 상응되는 학위 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한, 타 당사국이 수여한 학위를 인정해야 함</li> </ul>
제7장	난민, 유민 및 피난 상황에 처한 자들이 보유한 학위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국은 난민 등이 취득 학위를 증빙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인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절차를 개발해야 함</li> </ul>
제8장	평가·인증 및 인정 관련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국은 자국의 고등교육 기관과 질 보증 체제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국가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함</li> </ul>
제9장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이행을 총괄하기 위한 ‘아태지역 고등교육관련 학위인정협약 위원회’ 운영</li> </ul>
제10장	종결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의 효력발생’ 및 ‘1983년 협약과의 관계’ 등</li> </ul>

#### 4. Introduction

1983년 협약을 전면 수정안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해 각국은 인정평가(Assessment for Recognition)의 기회를 보장하되, 국내 학위와 실질적 차이(Substantial Difference)가 없다면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6월 26일 도쿄에서 채택된 새로운 협약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다양한 배경과 사회 문화를 고려하여 차별성 없이 모두 공평하게 교육을 평가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다.

UNESCO의 주최로 The 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7차 회의 중에서 가장 최근의 협약이다. 교육 자격의 평가와 고등교육의 수학(studies), 졸업증서(diplomas), 학위(degrees)에 대한 상호 인식을 규정한다.

이 툃킷은 아시아-태평양 실무자들과 교육기관들을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포괄적인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 **Part 1:** UNESCO 아시아·태평양에서의 해외학위 인정에 관한 지역 협약소개
- **Part 2:** 자격 평가와 절차의 원칙을 기술
- **Part 3:** *고등 교육, 부분적인 연구, 해외자격인증과 관련한 조항을 포함해*  
*자격인증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
- **Part 4:** *NIC,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Statement*  
*(국가정보센터, 고등교육 자격검증서)*  
*자격인증 평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보지원체제와 관련된 사항*

이러한 인정평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내의 고등교육 제도 및 질 보장 체제에 대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on Center)를 구축하고, 이들 기관을 연결하여 아시아태평양 국가정보센터 네트워크를 설립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국가정보센터는 고등교육 학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의 학위 설명자료(Diploma Supplement)의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 4-1 협약의 목표

- ③ 교육과 문화 교류를 수월하게 해주는 역할 한다
- ④ 학생과 학문간 이동성을 촉진한다.
- ⑤ 교육적 경험과 자격의 비교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⑥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 외국고등교육 자격인정에 대한 비교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기준들은 논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의 원칙들의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 4-2 자격평가에 관련된 원칙

- ③ 자격 보유자는 자신의 자격 평가의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 ④ 지식과 기술 성취에 따라 자격을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자격을 인증할 때의 기준과 순서를 따라야 한다
- ⑥ 적절한 정보를 통하여 인증에 대한 결정이 나야 한다
- ⑦ 자격 소지자는 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
- ⑧ 교육 시스템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교육 평가가 가능하다. 교육 기관은 인증 도구를 참고해야 하는데 예를 고등교육 자격 검증서(The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 Statement)가 있다.
- ⑨ 자격 평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지원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관할 당국에 있다.
- ⑩ 교육 시스템에 적절하고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양측 모두가 확인해야 한다
- ⑪ 자격 평가 인증은 정해진 기간에 평가가 끝나야 하며, 모든 정보가 충족된 시점 부터 평가 기간이다
- ⑫ 자격 인정이 보류된다면, 합당한 이유를 명시해야 된다. 또한 자격 보유자는 인증이 보류되거나 결정이 나지 않으면 정해진 규정시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5. 평가과정

### 5-1 관할 인정기관의 역할과 책임

관할 인식 당국은 지원자의 외국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① 자국의 기준을 비교하여 자격 인정
- ② 외국 자격 부분 인정
- ③ 추가적인 시험으로 부분적이나 완전한 인정
- ④ 지정된 조건에 따라 평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부분적이나 완전한 인정

### 5-2 관할당국에 의한 자격평가에 대한 요구사항

부분인정을 주는 것은 전체 인정을 얻기 위해 신청자의 결함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지 자동으로 입학허가 권리를 준다는 것은 아니다. 부분인정의 경우 관할 당국에 의해 인정되는데 몇몇 경우 증거를 제시한다면 인정 받을 수도 있다.

신청자가 원한 인증과 다르다면 관할당국은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신청자는 그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신청자가 이의 제기하고 추후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관할당국의 불인정 사유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평가에 대한 질의 표시와 지원자가 인증을 받으려는 활동능력을 표시하기 위하여 적합한 평가 기준이 결정 되어야 한다. 인증에 대한 평가는 연구의 양적인 면뿐 아니라 연구결과의 질적인 기준도 고려해야 한다.

## 6. 지원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들

국가정보센터와 관할 당국이 지원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① 필요한 서류, 인증된 서류와 번역본
- ② 평가 방법의 상세한 설명
- ③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
- ④ 인증서의 지위(자격)
- ⑤ 지원 접수를 위해 필요한 시간
- ⑥ 비용
- ⑦ 외국 자격 평가와 관련 될 수 있는 국법과 국제 조약 및 협약 참고물
- ⑧ 이의 제기 방법

원칙적으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관할당국은 지원자에게 이것에 대한 모든 양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인증된 서류 준비와 번역본은 많은 시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준다. 무엇보다도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지원자에게 설명 하는 것이 중요하다.

## 7. 평가 기준

관할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제 6 장 고등교육 학위인정에 따르면 각국은 국가 질적 보증기관이나 교차 보증기구를 설립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참조해야 한다. 자격의 결정은 고등교육기관에 의해 수여된 자격들은 UNESCO / 유럽 협의회 규정 원칙에 따라 분석된다.

### **Suggested Procedures That Can Be Used to Assess Foreign Qualification**

## 개인 자격의 평가

가. 자격인증서는 목적과 타당성을 명확히 해야 하며 광범위한 범위의 목적이 있다.

나. General access to higher education 고등 교육에 대한 일반적 접근

1. Restricted access to higher education (i.e., access restricted to certain parts of the higher education system)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 제한 (즉, 고등 교육 시스템의 특정 부분에 대한 접근 제한)
2. General access to further studies at a given level (e.g., doctoral or second-cycle studies)지정된 수준 (예를 들어, 연구 박사 또는 부차적인 연구)에서 추가 연구에 대한 일반 접근
3. Restricted access to further studies 더 나아간 연구에 대한 접근 제한
4. Access to professional training 전문 교육에 대한 접근
5. General access to the labor market (i.e., as a qualification for a wide range of positions at a given level)노동 시장에 대한 일반 접근 (즉, 주어진 수준 위치에서의 광범위한 자격 등)
6. Access to a specialized area of the labor market 노동 시장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접근
7. Access to a regulated profession 전문직 직종에 대한 접근

### 8-1 비용

무료 또는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요금의 정확한 지표가 제공되기 어려워 지역조건, 생활수준, 임금 수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8-2 번역

번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요문서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술적인 논문의 디테일 한 번역을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또한 공인 받은 번역사가 번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권한당국은 번역사들의 리스트를 제공 할 수 있다.



## 8. 자격 인정 절차와 기준

### 9-1 고등교육 접근 권한 인정

- ③ 각 기관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다른 기관이 발행한 자격을 인정한다.
- ④ 해당 기관은 특정 고등교육 프로그램 승인 시 일반 요구 사항에 추가하여 타 기관에서 획득한 자격증 (예: 언어능력)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 ⑤ 타 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수학을 마치고 떠날 시 전제 조건으로 요구되는 추가 자격 시험에 대해 접근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의 교육 시스템 내에서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다.
- ⑥ 고등교육 시스템에 관한 승인은 제한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승인 절차는 고등교육에서의 해외 자격 인증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정 섹션 III에의 공정성과 차별 금지의 기본 원칙에 따라 수행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⑦ 비전통적 방식을 통해 획득한 자격은 고려해야 할 요소로 타 기관의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⑧ 각 기관은 국내법이 요구하는 특정 사항 또는 기관의 기원에 따른 특정 협의를 통해 외국 교육 기관의 자격을 인정 할 수 있다.

### 9-1 일부 학습에 관한 인정

- ③ 가능한 경우, 각 기관은 타 기관의 고등 교육 프로그램의 프레임 워크 내에서 일부 학습을 인정하고 평가한다.
- ④ 가능한 경우, 기관 간 사전 합의가 되어 있거나 학생이 일부 학습에 관한 규정된 요구조건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을 경우 각 기관은 부분적인 학습에 대해 유연하게 인정한다.

## 9-2 해외 자격증에 관한 평가 기준

해외 고등교육 자격증에 관한 평가의 절차와 기준으로는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이 있다.

20세기는 전쟁의 중단, 제국의 균열, 폭력적 민족주의의 영향, 그리고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움직임 등 큰 격변을 겪었다. 따라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전 학습 인정 할 수 있는 절차 개발을 통해 난민, 난민과 유사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9-3 진문서 증명

국가들은 그들의 국내법과 기존의 관행을 검토하여 진문서를 증명할 수 있도록 규칙을 단순화하고 현대화할 것을 권고한다. 몇 국가는 문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어려운 절차를 마련하였다. 다음과 같은 증명은 불확실한 문서를 판별할 수 있다.

## 9-4 자격증

특정 시간에 획득한 특정 능력을 인정한다. 자격증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거나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

## 9-5 학습결과

학습 기간은 평가 기준 중 하나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며 “학습 기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학수 또는 학기로 표현되는데, 국가 간, 개별 기관 간 몇 주를 뜻하는지 서로 달라서, 학습 기간은 균일한 개념으로 고려되어선 안되며, 해외 자격증을 평가하기 위한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9-6 평가결과

관할 인정 당국은 지원자들이 최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면 또는 고등 교육 기관이나 타 관련 기관의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조력해야 한다.

## 9. 승인 및 인정 도구

각 기관은 고등교육 자격 인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 ③ 고등교육 시스템의 설명
- ④ 다른 유형의 교육기관에 관한 개요 및 각 유형의 전형적 특성
- ⑤ 시스템 승인/인정된 교육기관 목록(공립 또는 사립): 고등교육 시스템에 소속되어 있으며, 다른 유형의 자격과 교육 및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 명
- ⑥ 품질 보증에 관한 설명
- ⑦ 교육 시스템으로 부분적으로 고려될 국외 교육 기관 목록

### 10-1 National Information Center (국가정보센터)

국가를 대신하여 학위인정 관련 문제를 전담하는 정보센터이며 국내외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합법적이고 공인된 정보를 총괄 제공한다. 또한 외국 학위 등에 대한 인정심사, 인정관련 지침 및 자문을 제공한다.

【인정의 기본원칙】 인정결정은 투명(transparent)하고 적정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timely), 학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는 인정당국이 학위 간 실질적인 차이(substantial difference)\*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실질적인 차이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기간 등에 대한 의미 있는 차이를 의미하며, 국가정보센터는 이에 대한 지침 및 자문을 제공한다.

### 10-2 고등교육 자격증서

고등교육 자격증서는 국제 투명성을 개선하고 공정 교육과 자격(예를 들면, 학위 증서, 학위 증명서, 증서)에 관한 전문적 인정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인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는 학업의 수준, 맥락,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개인의 명의로 완벽하게 수행한 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충물이다.

### 10-2 고등교육 자격증서 구조

고등교육 자격증서는 학생의 자격과 능력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상호 인증 및 평가 결정을 내릴 때 정보로 활용된다. 고등교육 자격요건서는 학위 증명서에 첨부된 문서로 수여 받은 자격에 관하여 프로그램

수준, 기간, 입학 요건에 관해 설명한다. 이는 고유한 수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적 증명서와 다르다.

### 10-3 고등교육 자격 정책 내용

- ① 수여 기관의 간략한 설명
- ② 수업 언어
- ③ 연구 방법
- ④ 심화 학습 접근
- ⑤ 전문가 신분

### 10-4 Diploma supplement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요구됨

- ① 자격보유자에 관한 정보
- ② 이름
- ③ 생년월일
- ④ 학생 ID 번호

### 10-5 자격 식별 정보

- ① 자격증명 및 수여 제목 (원어)
- ② 주요 연구 분야
- ③ 연구 부여 기관 명 및 자격
- ④ 수업 언어

### 10-6 자격 수준에 관한 정보

- ① 자격 수준
- ② 프로그램 공식 기간

### 10-7 내용과 결과에 관한 정보

- ① 연구 방법
- ② 프로그램 요구사항
- ③ 학년방식
- ④ 자격전체 분류

<부록 3> 2012년 5월 서울 회의 한국 보고서



# Country Report

Korea  
By Innwoo Park  
(Korea University)

---

- 
- Recognition of foreign qualifications
  - Criteria and procedures
  - Issues and challenges
  - Progress in ratifying the Convention
  - View on the feasibility of a Global Convention

## Agenda

---

- Historical background
  - 1971: Registration of foreign degrees was required by law for the first time
  - 1991: Nation Research Foundation was appointed as the institute for the registration
  - 1994: A directory of worldwide universities was published by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2007: Verification of foreign degrees was started by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ended in Jan. 1, 2011.

## **Recognition of foreign qualifications**

---

- Registration of Foreign degrees at KRF
  - Was done by the holder of foreign degrees
  - Verified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submitted
  - The documents were checked with the accredited institute or relevant agency.
  - The registration was used for the employment by universities
- Verification by KNUE
  - An institute requests to verify foreign degrees to KNUE
  - KNUE sends out the request to the relevant institutes or agency
  - The reply is relayed to the institute that has requested the verification.

## **Recognition of foreign qualifications**

---

- Current Status
  - Universities or Institutes have a full responsibility for verification of foreign degrees by the laws.
  - MEST has published a manual for verification of foreign degrees.
  - Universities follow mostly the guidelines rather than their own procedures for recognition of foreign qualifications.
  - Mainly being focused on verification, less on accreditation to value the equivalence of the foreign degrees.
    - To verify whether the institute accredited the degree are legitimate or authorized by government
    - To verify whether the degree is actually accredited by the institute qualif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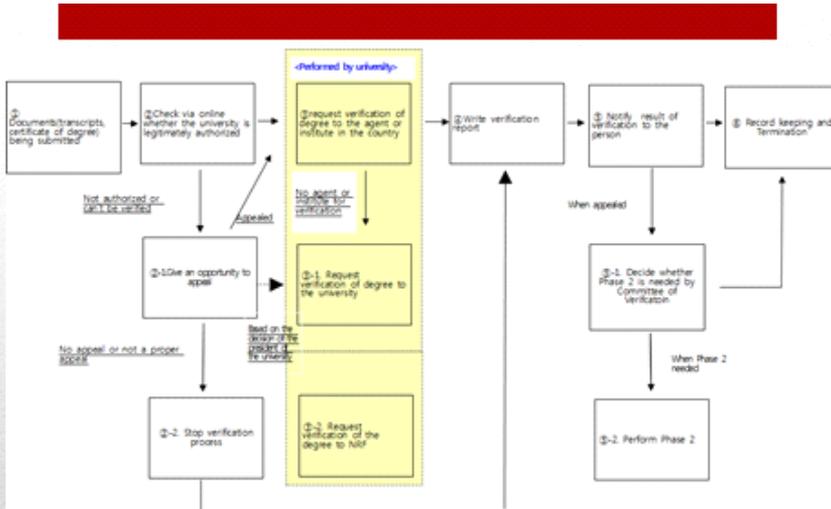
## **Recognition of foreign qualification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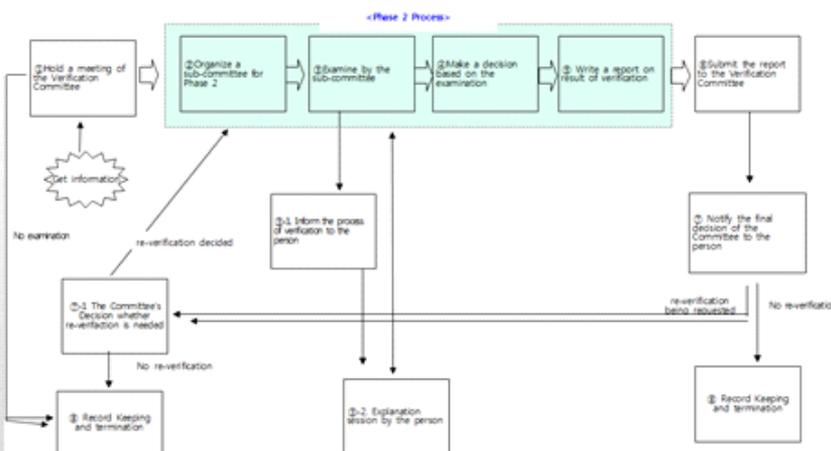
- A Manual on verification of foreign degrees is
  - Was distributed by MEST in 2011 to help universities
  - Mainly performed by universities with an assistance from NRF
  - Focused on verification of foreign degrees for employment and admission
  - Consisted of two phases

## **Criteria and procedures**

---



## Criteria and procedures



## Criteria and procedures

- No national or public information system for verification or recognition of higher education qualifications
  - The scope of recognition of foreign qualifications are limited to
  - Verification, not accreditation or equivalence of the qualification
  - Doctoral degree, no other degrees
  - Employment, not admission
- The institutes and systems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foreign qualifications are diverse, disperse, but not coordinated
  - Government manual
  - Universities' specific regulations or guidelines
  - NRF's registration and verification system
  - Information Service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by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 **Issues and challenges**

---

- Planning and holding an expert meeting in Seoul
- Ready to ratify the convention officially whenever the final version is available.
- Two studies has been launched:
  -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ratification of foreign degree in Korea, and the policies to be needed to conform the Convention
  - How to build national information center for higher education, and the network
- Increasing interest in recognition and assessment of foreign degree
- Willing to participate actively and continuously in the discussion of the issues

## **Progress in ratifying the Convention**

---

- Strong needs to have a Global Convention
  - Countries where the degrees were accredited are not limited to Asia, but worldwide
- Policies focusing on glob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 "Study in Korea" Project
    - To increase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 200,000 students in 2020(5.4%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 Global Korea Scholarship(GKS) program
    - Grantees are provided with tuition(3~5 years, including one year for language courses), monthly allowance, health insurance and round-trip airfare.

## **View on the feasibility of a Global Convention**

---

RR 2012-09

---

---

**아태지역 고등교육 학위인정 개정협약 채택의  
후속조치와 이행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발행** 2012년 10월  
**발행인** 신 현 석  
**발행처**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주소**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213호  
전화 : (02) 3290-2658  
팩스 : (02) 3290-2985  
<http://hepri.korea.ac.kr>  
**인쇄처** 제일문화사 (02) 921-7221

---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